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강화방안은 무엇인가?

발제 및 토론

좌 장 | 김종해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 제 | 제갈현숙 박사(사회공공연구소)

토 론 |

- 심선혜 의장(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 박천영 회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 장미순 운영위원장(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 박차옥경 사무처장(한국여성단체연합)
- 윤자영 박사(한국노동연구원)
- 방석배 과장(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 박광일 과장(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김안태 과장(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일 시 : 6월 26일(수) 14:00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 최 : 국회의원 남윤인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진행순서

시 간	행 사 내 용	참 석 자
14:00~14:05	개 회 사	남윤인순_국회의원
※ 좌 장 : 김종해_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14:05~14:30	주제발표	제갈현숙_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실장
14:30~15:50	패널토론	심선혜_공공운수노조연명 보육협의회 의장 박천영_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장미순_참보육을 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박차옥경_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윤자영 박사_한국노동연구원 방석배_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 박광일_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김안태_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장
15:50~16:20	종합토론	

목 차

▶ 개회사	6
- 남윤인순_국회의원	
▶ 격려사	8
- 이상무_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연맹 위원장	
▶ 인사말	10
- 이찬진_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인사말	12
- 권미혁_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발제문	15
- 제갈현숙_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실장	
▶ 토론문 1	35
- 심선혜_공공운수노조연명 보육협의회 의장	

▶ 토론문 2	43
- 박천영_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	
▶ 토론문 3	79
- 장미순_참보육을 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 토론문 4	85
- 박차옥경_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토론문 5	89
- 윤자영 박사_한국노동연구원	
▶ 토론문 6	93
- 방석배_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	
▶ 토론문 7	97
- 박광일_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 토론문 8	101
- 김안태_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장	

개 회 사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남윤인순입니다.

우선 오늘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강화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주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제갈현숙 박사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토론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대 국회가 시작된 후 보육정책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 온 여러분들과 함께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해 왔으며, 오늘 이렇게 네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무상보육 재정안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다양한 양육지원 방안 마련’을 주제로 개최했던 토론회를 통해 입법과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 관련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을 발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거나, 현재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법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다양한 양육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아낸 지금. 저는 이제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2013년 현재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이 2조 6천억원입니다. 여기에 지방비와 교육부 예산까지 합치면, 6조원이 넘는 예산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유아보육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최근 송파경찰서에서 어린이집 운영 비리가 대거 밝혀지고, 대구에서 보육교사 블랙리스트가 발견되는 등 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몇몇 사건들로 인해 참보육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많은 선량한 어린이집들이 함께 매도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린이집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어린이집 운영 비리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부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에로사항 및 문제점이 밝혀지고, 해결책까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강화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6. 26

국회의원 남 윤 인 순

격 려 사

보육현장을 바꾸어 나갈 주체는 바로 보육노동자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남윤인순 의원님,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그리고 토론과 발제를 맡아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연맹 보육협의회의 모토는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입니다” 이 말에는 현재 보육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노동자들의 바람과 지향이 잘 함축되어 있습니다. 직접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무와 저임금이라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이들 역시 살인적인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아닌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보장받을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5.3%에 불과한 현재 어린이집 현황은 이윤획득이 목적일 수밖에 없는 민간 어린이집이 보육현장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공공재로서의 보육을 민간에게 정책적으로 떠맡겨 온 결과입니다. 이러다 보니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담합은 점점 더 강화되고 최근에는 대구지역에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원장들의 블랙리스트 실체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그것을 감시하고 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체는 보육노동자들입니다. 하지만 보육노동자들은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공론화할 경우 재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육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하게 조성되어야 할 때입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이 풍부하게 논의되고 더 나아가 법·제도 개선이라는 구체적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맨 앞에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2013. 6. 26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이 상 무

인 사 말

반갑습니다.

이번 릴레이 토론회를 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주최하는 단체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인사드리는 이찬진입니다.

지난달부터 아동학대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끊이지 않더니 어린이집 관련 부정과 비리문제들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내 급·간식비리, 아동 학대문제, 국가보조금 횡령, 특기교육 리베이트 문제 등에 이어 어린이집 원장들의 부당행위에 항의하거나, 어린이집 비리를 고발한 보육교사들과 아이 부모들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원장들끼리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블랙리스트 근절을 지시했지만, 주인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상당수의 어린이집 원장들은 정작 막중한 공적인 책임을 망각하고 부정과 비리의 시정을 요구하는 보육교사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보육교사의 취업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들 원장들은 섬겨야 할 대상이자 어린이집의 주체인 부모들 중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을 ‘블랙컨슈머’로 낙인찍어 해당 지역 어린이집들과 담합하여 아이의 보육을 거부하는 실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의 이러저러한 명목의 요구로 부모의 보육료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 서비스 품질은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나 국공립시설은

늘어나지 않고 이제는 근처 어린이집에 가는 것마저 용이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만 6천여개소에 달하는 민간 보육시설들의 조직적인 반대로 지역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보육은 민간이 유료로 시장에 공급하는 단순한 용역서비스가 아닙니다. 보육은 부모의 돌봄을 대체하여 부모와 더불어 아동에게 제공하는 국가의 공공성에 대한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하는 초·중등학교 의무교육과 마찬가지로, 보육은 영리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누구나가 이용가능한 질 좋은 보편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보육시설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를 하도록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된 양질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현재 드러나고 있는 실태는 보육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그동안 재정지원만 확대해 온 정책이 초래한 결과인 것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민간시설이 90%가 넘는 어린이집 현실 속에서 자신이 투자한 사업에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이런 불법이 들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용인해 준 꼴이 된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부모로부터 신뢰받는 보육, 아이가 행복한 보육이 가능하도록 제반 정책을 재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상시적인 공공관리체계 및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보육의 질을 감시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개방형 거버넌스를 법제화시키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운 초여름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주제발표를 준비하여 주시고 토론을 준비하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 및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3. 6. 26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 찬 진

인 사 말

지난해부터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진행된 릴레이 토론회가 벌써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보육 공공성의 개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필요성, 다양한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보육교사를 중심에 놓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방안을 모색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보육교사 ‘따라쟁이’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보육교사의 말투와 몸짓을 따라합니다. 어느 때는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교사, 보육교사는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주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해결책은 매우 제한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지자체별로 수당을 인상하거나,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준에 따라 보육교사가, 우리 아이들이 다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되짚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보육교사의 인적사항을 공유하면서 채용을 꺼리는 블랙리스트가 실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어린이집 운영에 불만을 가진 부모를

블랙컨슈머로 규정하는 보육현장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건사고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보육정책이 그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사회가 변하고 있지만, 보육정책은 사회적 변화에 둔감하거나 그 폐해를 무시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매우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원장님과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는 부모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육현장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에서 중요한 주체인 보육교사들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보육정책은 부모의 일생활양립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대안이 조속히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현장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정책당국자들이 재정의 한계 등을 운운하며 새로운 시도를 지연시킬 때, 부모들은 허탈하고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고, 그 사이 우리아이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아이들이 빠른 시일내 좋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해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3. 6. 26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권 미 혁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강화방안은 무엇인가?

주제 발표

비리제로!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
어떻게 가능할까?

제갈현숙_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실장

비리제로!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 어떻게 가능할까?

▶ 제갈현숙_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실장

1. 서론

2013년 2월 송파경찰서가 「영유아 어린이집 원장 국고보조금 편취 및 아동학대」를 적발한 이후 어린이집 비리 사건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으로 부각된 비리의 유형으로 첫째, 특별활동비와 음식재료비 유용, 허위 보육교사 등록을 통한 보조금 횡령, 식자재 및 시설공사비 허위청구 등과 같이 다양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국고 보조금 횡령 및 어린이집 재정에 대한 부적절한 착복이다. 둘째는 급식관련 비리로 식재료비를 줄이기 위해 식재료의 유통기간을 무시하거나, 질 낮은 식재료를 사용한 경우가 해당한다. 셋째는 영유아에 대한 부적절한 케어, 학대,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비상식적인 대상자에 대한 태도이다. 이와 같은 비리는 가능한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보다 많은 이윤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 시설 운영자의 사리사욕과 맞닿아 있다.

2012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단 5.2%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대부분 어린이집은 시설운영자의 개인적인 운영목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즉 어린이집 운영 목적이 영유아 양육 및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이해를 달성하는데 있다기보다는 개인이 ‘사업’적인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다.

<표 1> 어린이집 설치현황(2012. 12. 31.기준)

구 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12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2011	39,842	2,116	1,462	870	14,134	20,722	89	449

이러한 현실은 공공재적인 사회서비스 성격을 담지 한 보육서비스를 애초부터 민간중심적인 공급체계로 구조화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더욱이 보육료지원 사업이 ‘무상보육’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민간공급자들은 보육시장에 진입하게 되었고,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질서는 사후적인 지도 및 점검으로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육 현장의 비리 문제를 감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책임자는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

보육교사들은 각 시설에서 평균 10시간 노동을 하며 가장 일선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있다. 이에 급식의 상태, 어린이집 재정관련 흐름, 영유아 케어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주체이다. 그러나 보육교사와 원장(시설장)과의 관계가 종속적인 성격이 강해서, 보육교사의 독립적인 판단과 행위가 사실상 보장되기 어렵다. 더욱이 지난 5월 대구시 달서구에서 풍문으로만 떠돌았던 ‘보육교사 블랙리스트’가 발견되면서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의 무소불위 권력의 폐해가 드러났다.

이 글은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사건을 조명해봄으로써 사건이 갖는 의미와 해결방안 그리고 보육교사의 독립적 권한 강화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중심의 공급구조가 장기적으로 더 나은 공공성 달성을 위해 개혁해야할 과제를 재고한다.

2. 대구 달성구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사건

1) 사건의 사회 이슈화 단계

5월13일 CBS 김현정 뉴스쇼를 통해 어린이집비리고발상담센터 김호연 센터장은 어린이집 원장 및 시설장들의 연합회 쪽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이것이 연합회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블랙리스트의 대상자는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를 목적으로 보육교사나 학부모들이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제보를 할 경우, 이 사실이 다시 해당 원장에게 전달되어 보육교사는 블랙리스트로 학부모들은 블랙컨슈머로 관리된다는 사실이었다. 이후 2013.05.27. MBC PD 수첩에서 관련 이슈가 <어린이집 공개하라!> 로 방영됐고, 2013.05.28. 대구지방노동청에 관련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40조 취업방해죄로 고발 조치되었다. 블랙리스트 사실 확인이라는 공론화는 매우 이례적이었고, 그만큼 사회적 반향도 상당했다.

2) 해당 교사들이 블랙리스트 사건 경과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리라어린이집의 원장은 업무방해의 이유로 퇴사한 교사들을 고소했다. 이 고소를 계기로 해당 원을 퇴사했던 교사들은 자신들이 블랙리스트로 협회로부터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해당 교사들의 퇴사사유와 블랙리스트 증거를 차례로 살펴보자. 관련 내용은 용기를 내서 블랙리스트 문제를 사회화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 주신 담당선생님들의 제보내용 및 자료를 참고했다.

교사 A선생님은 2011년 9월 7년간 함께 일했던 원장의 소개로 해당 원에 입사했다. 입사 후, 고유 업무가 아닌 55명의 아이들 간식 만들기를 수당도 없이 5개월 여간 지속 했다. 뿐만 아니라 야근 및 차량운행까지 빈

변하게 담당했다. 2012년 2월말에 A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 모두가 퇴사하게 되었다. 평가인증을 앞두고 시설 공사 및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두 달 여간 교사들의 야근이 지속되었다. 공사 중 아이들에겐 매우 위험한 보육환경이 지속되었고, 간식 등에 원의 문제점에 대한 항의는 원장의 폭언으로 묵살되었다. 그러던 중 4월말에 이번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단초가 되는 사건이 발생됐다. 야근 중 원장이 조리사를 통해 냉장고에 넣어 둔 김밥재료를 보게 되었고, 이것은 원장 자녀의 소풍 때 사용했던 김밥재료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속에 뒤엉켜 보관되어 있었다. 원장은 이것을 보육 교사들에게 먹으라고 했다.

<그림 1> 김밥재료 사건 당일 보육교사들이 찍은 사진



교사들은 저녁을 포기하고, 일을 모두 마친 후 퇴근하였다. 해고와 재취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을 뒤늦게 해당교사들은 후회했고, 아이들에 대한 교사로서 미안함이 커졌다. A교사는

해당 원을 퇴사했고, 이후 검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도 그만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사A와 대구연합회장 간의 통화 녹취 일부]

교사A: ...그 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쓰레기봉지에 김밥재료를 담아주시고 몇일...한 오일이 지난 김밥재료...자기 딸 소풍갈 때 쓴 김밥재료를 주시면서 그걸 주시면서 그걸로 김밥을 만들어서 싸먹고 원에서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연합회회장: 그러면 쌤님 좋아요. 원장은 그 딸내미 소풍간다고 재료 샀던 게 남아가지고, 많이 남아가지고 이거 싸먹으면 되겠다. 그리고 누구는 상했다고 말을 하는데 상했든 안상했든 모르고 졌어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불찰이 뭔고 하면 원장님 이거 상한 거 같아요. 안상했으면 뭐 안상했으면 그만이고 상했으면 아 상한 것 같아요. 이거 못 먹어요. 원장님 한번 맛보세요. 한번보세요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이거야. 유치부도 아니고 어린애도 아닌데...

[중략]

교사A: 저희 그냥 재료를 갖다 뵈다 하시 길래 재료 갖다 뵈다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가서서 원장님 말씀대로 저녁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문을 열었는데 쓰레기봉투 안에 그게 들어있었어요.

연합회회장: 근데 쓰레기 봉투라는게 종량제 봉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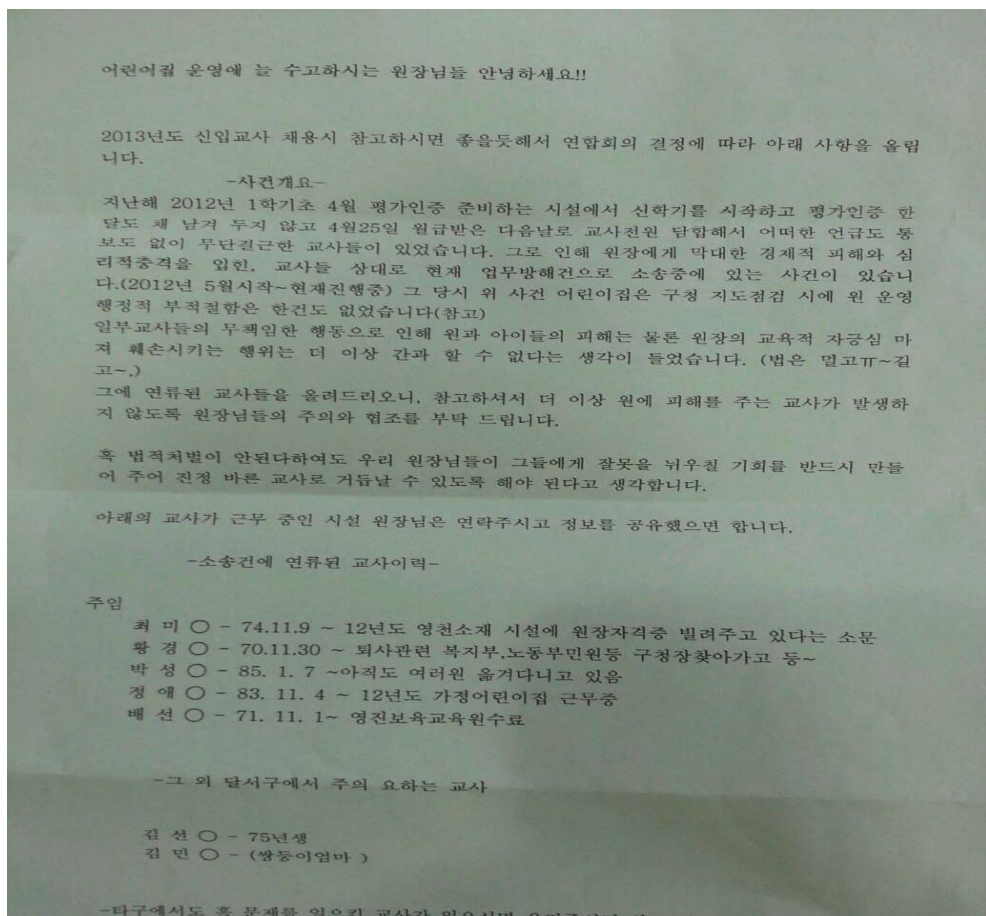
연합회회장: 슈퍼가면은 종량제 봉투에 장 봐와요. 그럼 집에 있는 종량제봉투 쓰레기 안담은 거는 일반 비닐봉지나 마찬가지로요. 안 썼던 거면은 담아 올수 있죠.

교사A: 그케가꼬(그래서)

연합회회장: 트집잡지.. 트집예요. 그거는 생떼고 그 봉지에 상관없어요. 선생님들이 그 김밥을 먹기 싫고 다른 게 먹고 싶은 게 중요한 이유지, 그건 하나의 핑계예요. 원장님 우리 오늘 늦게까지 일 할 건데... 이거 먹고 안하고 싶고 뭐 다른 거 따뜻한 거 시켜먹고 싶어요. 그걸 왜 말 못해요. 주임선생님이든 누구든 하면 되는 거고...

교사B의 경우, 평가인증 이후 원장의 일방적인 사직 종용으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원장은 평가인증을 위해서 경력교사가 필요했는데, 교사B의 자격이 적격이라는 이유로 입사시킨 후, 평가인증을 마치자마자 시설연합회의 공유문건인 블랙리스트를 내밀며 퇴사를 종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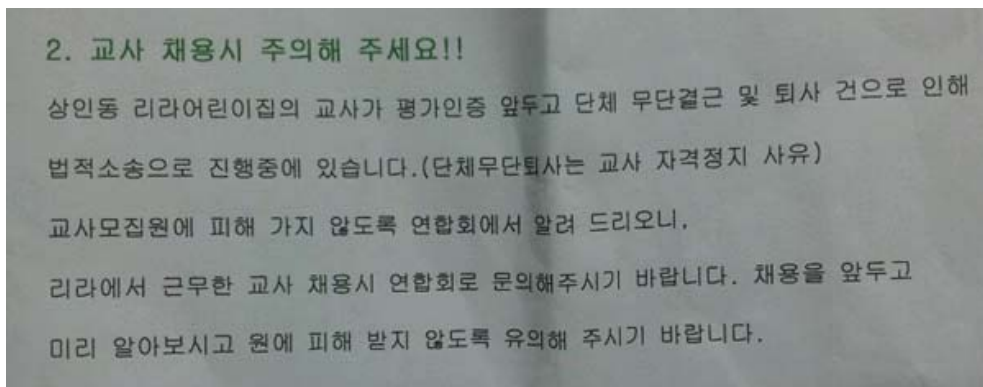
<그림 2> 시설연합회가 작성한 블랙리스트



해당 원장은 보육교사들을 고소한 이후 민간어린이협회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달해서 블랙리스트로 해당 선생님들의 명단을 추가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5월 29일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10여개 노동 및 시민단체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재취업을 방해하기 위해 교사들의 신상이 담긴 블랙리스트 문건이 작성되고 유포된 점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후 6월 3일 대구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포에 대한 사과를 밝혔다.

<그림 3> 시설연합회가 작성한 문건



3)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의미

교사A와 교사B의 사례 그리고 교사A와 협회장의 전화통화를 통해 우리는 보육현장에서의 교사의 지위가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다. 우선 보육교사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야기되는 것이 어느 곳에서든 ‘원장에게 찍히면 안 된다’는 것이다. 원장이나 시설장들은 대부분 협회에 등록되어 있고, 이들은 민간보육시설의 시장에서의 우위적 지위와 이제까지 누렸던 그들의 이권이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실행행사를 한다. 이러한 행태자체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단체 행동이 공공의 이해에 위배되는 경우 집단행동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담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의 교사들은 원장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점유하기 어렵고, 이러한 관계의 특수성으로 보육현장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하거나 제보하기 어렵다. 용기를 내서 원장에게 항변하거나 비리나 의혹에 대해 제보를 하더라도 교사가 보호되기보다는 신분이 노출되어 오히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재취업의 불가의 불이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위해 돌봄을 제공하기보다는 원장의 사리사욕에 맞춰 때로는 비리에 담합하거나 때로는 보고도 못 본 척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원장이나 협회의 독점적인 권한에 대응할 만한 교사의 권한이나 보호가 부재하다면, 보육현장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주체로써 아이들의 지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3.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고려 요소

1)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의 내실화

복지부는 2010년부터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부정사용 이용불편 신고 및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에 대한 급·간식, 위생, 안전상 유해한 환경을 제거하고 보육료 부정사용 행위 근절을 통해 어린이집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아동 보육의 최적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자료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접수건수를 살펴보니, 2012년(8월까지)의 접수건수는 142건에 불과했다. 포상금(보조금 환수액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받은 건은 28건(19.7%)에 불과했다. 제도 시행 이후 전체 누적제도 접수건수는 총 665건이고 이중 처분건수는 521건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이용실적이 낮

은 원인으로 복지부는 홍보부족과 신뢰부족을 꼽았다.

<표 2>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접수 및 처분건수(2010-2012.8, 단위: 건)

구분	접수건수							처분건수		신고인 철회	현 조 사 종
연도	계	보육 료	보조 금	어 린 집 영 유 원	보육 교 사 원	아 동 학 대	기 타	전 체	포 상 금 지 급		
계	665	260	3	222	76	15	89	521	104	123	21
2010	201	83	2	54	19	-	43	157	18	44	-
2011	322	133	-	98	33	14	44	260	58	62	-
2012. 08	142	44	1	70	24	1	2	104	28	17	21

달서구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를 구청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전까지 불편신고를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후 주민참여공간으로 이동한 후 불편신고센터를 찾는 순서로 이루어져서 운영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이 상당했다.

이처럼 정부는 상시적인 지도감독인력의 부족으로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어떤 형태라도 개입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의 인지상태는 상당히 낮고, 보육교사의 경우 신변보호에 대한 미지수 때문에 신고인 중 단 10.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보육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센터의 적극적 운용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해당 센터의 설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쉬운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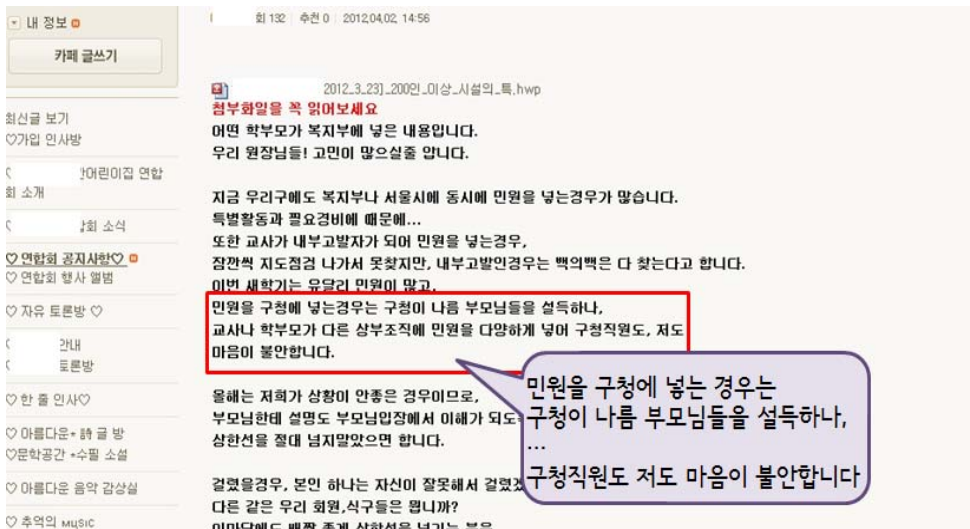
2) 지자체와 어린이집의 유착관계의 위험성

지난 5월 송파경찰서 수사팀 앞으로 “저희는 이제 영원히 취업 못한다고. 원장들한테 명단이 돌려졌대요. 우리를 살려주세요.”란 문자가 도착했다. 문자를 보낸 보육교사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2년 6개월가량 근무했고, 어린이집 비리를 제보했다는 의심을 받아 3월 해고됐다. 그런데 원장이 해당 교사를 의심하게 된 계기는 바로 올 초 서울시 보육담당 공무원들로부터 불시 점검을 받게 됐는데, 이때 점검 나온 공무원들이 원장에게 보육교사들에게서 민원이 접수됐다는 식의 얘기를 공공연히 했다는데서 근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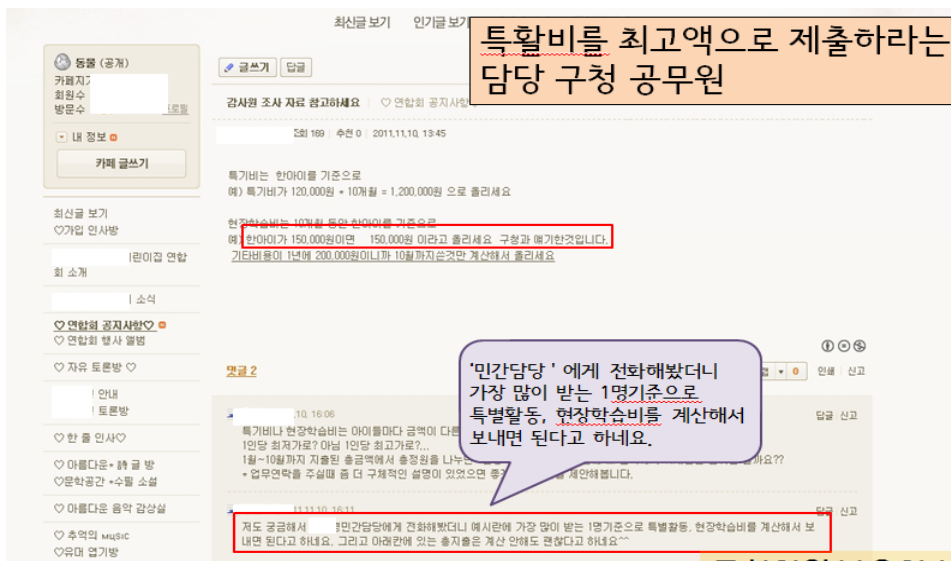
이 사례에서는 첫째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원칙을 공무원들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적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동법 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2011년 제정되어 아직 법의 엄중함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공익을 위한 제보는 더욱더 수면으로 나오기 어려워 질 것이다.

둘째,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왜 해당 원장에게 알려줬는가에 대해 주목해다 한다. 즉 이들의 관계가 지극히 공무적인 관계라면 이러한 정보고유는 불필요한 행위에 불과하다. 즉 이 관계의 이면에는 지자체와 어린이집 유착관계가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한다.

아래 자료는 남윤인순 의원이 2012년도 복지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자료이다. 아래자료는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의 인터넷 카페에 구청직원이 들어가서 게시 글을 캡처한 것이다.



첫 번째 내용은 학부모가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구청 공무원이 부모님을 설득하며,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상부조직에 민원을 다양하게 넣어서 공무원과 원장이 불안하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내용은 “민간담당에게 전화해봤더니... 가장 많이 받는 1명 기준으로 특별활동, 현장학습비를 계산해서 보내면 된다고 하네요”라고 적혀

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특별활동비가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구에서 정한 최고액으로 작성해서 보내라고 구청에서 어린이집에 귀띔을 해준 것이라고 한다. 민간어린이집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구청 담당자가 이 정도 수준의 정보를 회원으로만 유지되는 카페에 가입해서 제공할 정도면 구청과 민간어린이집의 유착 수준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어떤 지자체의 경우 저녁 9시쯤 어린이집 학부모가 인터넷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을 접수한지 30분도 되지 않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화를 받아서 협박을 당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아는 어린이집 교사나 학부모는 시·군·구에 민원을 넣으면서 시·도나 복지부에도 접수한다고 한다.

상황이 이 정도면 정부는 지자체와 어린이집의 유착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경우 선거를 매개로 부적절한 관계가 확대되고, 지역유지로 협회장들의 활약이 각 지역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구조에서 민간협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공부문의 역할 회복의 경로가 요청된다.

송파경찰서의 어린이집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망에 걸린 갑씨는 어린이집 5곳을 운영하면서 현재 2억 원대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직 연합회 회장이자 현직 구의원이라고 한다. A씨를 포함한 송파구 관내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임원 50명은 경찰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모여 자신들을 범죄 집단으로 모는 상황에 대해 보육거부 선언을 하든지 어린이집 인가증을 반납하든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중앙일보, 6. 13일자). 송파구청과 경찰서가 일제 합동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일부 구의원들은 과잉조사를 계속하게 된다면 예산협조가 어려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것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구의원들이 표를 의식해서 원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심각한 비리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이미 각 지역에서 세를 형성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협회는 스스로

정화기능을 갖기보다는 그들의 세를 이용해서 구청, 구의원 모두에게 로비 정치를 통해 공공의 이해에 폐해가될 정도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권위적인 지배와 위계질서는 현재의 권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고서는 변화하기 어렵다.

4. 결론: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사 권한 강화 방안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론화를 통해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지위와 관계가 얼마나 위축되었고 종속적인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의 의무는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기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간에서 맡은바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육교사의 고용관계가 민간 보육원장의 손에 달려있고, 원장들은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어긋나는 보육교사에 대해 해고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해서 보육현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보육교사들의 우선 철칙은 원장의 규칙에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다. 그 규칙이 설사 아이들에게 위험적인 요소가 되더라도 보육계를 떠날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 수용해야하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인 것이다. 즉 보육교사의 독립적인 권한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조금의 양적 증대가 질적 서비스 제고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 보육교사의 권한 강화 방안을 언급하기 전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공과 민간의 균형에 대한 방향이 전제되어야 한다.

1) 보육지원방안 개선 및 국공립 비율 증대를 위한 예산 확충

바우처 방식은 소비자의 소비권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민간중심의 어린이집 구조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제보를 한 학부모들은 원

에서 기피하는 블랙 컨슈머로 낙인 되고 있다. 즉 현재 민간주도적인 어린이집 구조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도 제한적이고, 원장의 지배적인 권한 대응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 바우처는 정부의 행력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증명되지 않는 바우처를 통한 소비권 강화의 환상에서 깨어나 보육지원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은 비단 전달체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급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와 병행되어야 한다. 단 5.2%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면 민간의 태도변화는 어렵게 된다.

민간이 긴장하고, 국공립과 경쟁해야만 하는 수준의 비율로, 적어도 한 가정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국공립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민간을 선택하는 구조자체가 변해야 한다. 그러므로 보육료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보육예산규모에서 국공립 확충을 위한 재정확보 및 비율을 높여야 한다. 2013년 보육사업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는 것은 영유아 보육료지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63%에 해당한다. 반면 국공립 신축 예산이 포함된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은 0.6% 수준에 머문다. (<표 3> 참고)

<표 3> 2013년 보육사업예산

구 분	2012 예산(A)	2013 예산(B)	증감 (B-A)	%	주 요 내 역
계	3,028,567	4,131,345	1,102,778	36.4	
□어린이집운영 지원	423,153	444,463	21,310	5.0	
○보육활동서비스 (총사자인건비)	423,153	444,463	21,310	5.0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 42,427명 • 영아전담 : 6,409명 • 시간연장 : 10,000명 • 장애아 등 : 5,071명 • 대체교사 : 500명
□영유아보육료 지원	2,391,291	2,598,219	206,928	8.7	• 0~5세 전계층 1,115천명 • 장애아 무상보육 14천명 • 시간연장 보육료 53천명
□어린이집 기능보강	11,867	23,610	11,743	99.0	• 신축 국공립 75개소 • 공동주택리모델링 9개소 • 장애아전문 2개소 • 기자재구입 30개소 • 환경개선비(장비비) 350개소 • 장애아보육환경개선(장비비) 69개소
□보육인프라 구축	15,377	24,990	9,613	62.5	
○보육사업관리	3,247	4,059	812	25.0	• 보육사업 행정지원 및 홍보 • 우수보육프로그램 발굴·보급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7,040	8,636	1,596	22.7	• 중앙 및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5개소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1,838	5,054	216	11.8	• 자격관리, 보수교육 운영비 지원 • 누리과정 연수비용 지원
○보육프로그램개발 및 연구	225	202	△23	△10.2	•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보육전자바우처운영	3,027	11,395	8,368	276.4	• 전자바우처운영 및 시스템기능 개선 • 아동 통합원 관리체계 구축
□보육시설평가인증	6,026	6,668	642	10.7	• 평가인증 운영 및 사무국 지원
□어린이집 시설지원	78,207	150,445	72,238	92.4	
○교재교구비	10,153	8,630	△1,523	△14.9	• 교재교구비 지원
○차량운영비	4,940	4,940	-	-	• 차량운영비 지원(20만원/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46,172	105,802	59,630	129.1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2천명 • 교사간직원장지원 23명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	1,024	1,024	순증	•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773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6,942	30,049	13,107	77.3	• 시설유형·규모에 따라 운영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02,646	880,950	778,304	758.2	• 만 0~5세 전계층 1,193천명

2) 보육교사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철저한 적용

최근 벌어진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통용되는 불법행위가 향후로는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육계 전반에서 인지해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들이 블랙리스트가 두려워 할 수 없었던 공익적인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그 어떤 불이익이 제보자에게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던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의 각종비리는 국민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2) 보육교사 고용주체 전환: 지자체 직접 고용

현재 원장과 보육교사의 고용계약관계를 전향적으로 전환할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교사의 고용자체가 원장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교사의 권리 및 권한 자체가 상당히 제약적이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지원 확대 등으로 교사에 대한 임금의 상당부분은 현재 공공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즉 학교교사와 보육교사의 노동의 성격은 매우 흡사하다. 다만 직업 진입경로의 차이와 공공재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적 차이로 인해 두 직종의 차이가 당연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중등교육의 상당 부분은 사립학교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교원의 신분은 모두 공무원으로 보장받고 있다. 보육현장은 규모의 차이 등으로 당장 학교 현장과 비슷한 구조로 통

일화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지자체 차원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직접 고용형태는 시도할 수 있다. 즉 고용주가 각 어린이집의 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신분으로의 전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지자체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고용주체의 변화가 갖는 의미가 보육교사의 공무원지원 확보라기 보다는 민간어린이집원장의 독점적 권한으로부터 독립적인 교사들의 권리 제고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충분한 실마리는 찾아질 수 있다.

(3) 상시적인 근로감독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6월18일 대구 서부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25곳을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체불에 대한 수사감독 결과를 발표했다(대구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보도자료. 6. 19.). 그 결과 25곳 중 23곳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 주요 법위반 사항(단위: 개소, 명, 천원)

구 분	금 품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여부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 부
	계	최저 임금 미달	주휴·연장 휴일근 로수당	연차휴 가 미사 용수당	임금 미 지급		
위반 업체수	52(60%)	14(16%)	5(6%)	13(%)	20(23%)	42(49%)	43(50%)
미지급 금액 (1인당 미지급액)	66,157 (318)	6,738 (77)	10,039 (176)	8,361 (310)	41,019 (1,109)	-	-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의 어린이집이 2곳이나 되고, 퇴직금을 떼먹은 어린이집만 11곳에 달하며 체불액의 규모는 1,300만원이 넘었다. 고용노동청의 이러한 감독은 민간 보육원장들의 고용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갖게 할 수 있고, 위법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례를 보편화시키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 업자들이 보육시설을 고

용주로서의 책임 없이 운영할 수 없다는 인식을 성장시킬 개연성이 존재한다. 나아가 최소한의 고용주로서의 책임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거나 위법사항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인가를 취소하는 적극적인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자격유무를 떠나 어린이집을 설치해 온 것이 과거의 정책방향이라면 앞으로는 공공재를 운영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주체로서 민간원장의 기준을 세워 탈락 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한다. 이 기준의 중요한 잣대로서 근기법 준수 여부가 유의미 할 것이다.

보육협의회, 보육교사협회, 그리고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는 지자체가 보육교사를 직고용할 것, 10-12시간 근무가 아닌 8시간 근무와 2교대제 시행, 5시간 보육 3시간 수업준비를 내세운 '8253제도'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보육의 4대 악인 회계조작, 저질 급간식, 블랙리스트,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꼽고 있다.

보육의 중요 주체로서 이들의 주장이 실현되기 위해서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도 국공립 확충을 위한 보육재정 조정, 공익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내실화, 지자체와 어린이집 유착 단절,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상시적인 근로감독, 지자체 직 접고용은 재고할만한 가치가 있는 대안으로써 논의될 가치가 있다.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문 1

보육노동자를 살려내는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심 선 혜_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보육노동자를 살려내는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 심 선 혜_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횡포’,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저항’을 포기하지 않는다.

○ 블랙리스트 폭로 이후

- 어찌면 지금, 000연합회장의 협박처럼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법보다, 법 이상으로, 법과 상관없이'..연합회의 규정에 따라.. 살면서 어떤 제재를 당할지..'라고 협박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에 원장연합회와 대구시가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서로 한 발씩 물러서자’는 제안을 하면서 겉으로는 사과하고 대화를 시도 하려는 척하지만 저들은 시종일관 속내를 들키고 있다. 여전히 그들이 연합회모임에서 이 교사들을 매장시키기 위한 작업을 매우 잔인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들어나고 있다. 사과의 내용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분노가 더 높아진다. 교사들과 친분이 있었던 교사들은 함께 도와주지 못하겠다는 미안함과 외면을 보이고 있고, 최초 블랙리스트를 흘린자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들이 감지되고 있다. 기자라며 전화해서 유도질문하고, 모르는 번호, 발신자 제한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들은 교사들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 또 다른 횡포들과 맞선 사례

- 평창에서는 공립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내부고발로 모두 해고당한 사례도 있다. 원장의 비리를 민원으로 제기한 결과 위탁체는 교체되었지만 새 위탁체로 변경되는 1개월간의 공백기에 군청 공무원이 교사들에게 1월짜리 계약서를 종용했고, 새로운 위탁체는 신규채용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이들을 모두 해고했다. 이 교사들은 지금 부당한 행위에 맞서 위탁체와 군청을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밖에도 지금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집 대표들의 비리에 맞서는 교사들의 고군분투가 눈물겹도록 진행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재취업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림자 투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간혹 담당 공무원들의 파렴치한 누설로 이 그림자들조차 사라지는 것을 볼 때면 싸워야할 대상이 너무 많은 보육노동자들은 힘겨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 공공성을 거부하는 사용자단체

○ 한국 보육법인 이사 총회 결과 보고

- 아래는 최근 법인 어린이집에 통보된 ‘한국보육법인 이사회 결과보고’이다. 여기서 이들은 민간 어린이집과 다름없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재산권 보장을 위한 헌법 소원.

(1) 왜 우리는 헌법소원을 해야 만 하는가?

가, 인간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국가가 침해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법인재산 시 잔여 재산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토록 한 헌정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나, 평등권의 침해 → 개인재산 출연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재산은 개인이므로 타 법과 평등성에서 위배됨.

(가) 사립학교법 제35조 (재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나) 민법 80조 (재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다) 일본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재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한 자에게 귀속함) (*일본에서 정부지원금은 정부보조금이 아닌 정부부담금으로 명명)

다, 우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

(가) 사외이사 도입 (도카니법 관련으로 입법)은 가장 문제시 되는 사안임.

(나) 원장 정년제 문제 (제1세대: 70세, 제2세대부터 65세로 현 실시 중)

(다) 법인 어린이집 교사 노조 설립 움직임 (종전당 발의 입법)

○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운영 개선(안)

- 지난 6월 4일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서울형 어린이집 인장 반납'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은 곧 '서울형 공인 포기를 통해 아동차별 및 교사 차별 해소, 어린이집의 추락된 사회적 명예회복과 현실적 운영을 위한 회계구조 개선을 위함'이라는 내용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서울형 어린이집' 반납 후 모든 민간 하나 되어 하나 된 요구를 서울시에 하자는 취지의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 보육노동자의 단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구조

○ 담당 공무원의 비협조

- 교사들은 더 이상 참으면 안된다고 생각되는 순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는데, 이때 바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곳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이다. 하지만 용기를 낸 교사들의 전화를 받는 공무원 받아 비판 마땅하다. 그들은 교사를 혼내기도 하고, 교사와의 통화가 끝나기 무섭게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교사 단속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원장님 원에 싸이코 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도 서슴치 않는다. 얼마전 한겨레 신문을 통해 민원내용을 원장에게 전달한 사실과 MBC 뉴스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원장들(그중에 비리시설원장들도 포함됨)과 소풍을 간 사실도 드러났다. 지도감독을 하고 행정처분을 주고 받아야 할 관계가 관행적으로 친목행위를 도모하는 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유착의 정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 노동조합 선전전 방해

- 보육노동자들의 단결은 더 이상이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보조금 횡령과 비민주적인 운영과 권력독점 속에서 아이들이 다치고, 교사들이 신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꿔 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행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노동조합을 알릴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 유일하게 교사들을 만날 수 있는 보수(승급)교육장에 노동조합의 출입을 허가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힘을 모으자’는 한마디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은 없다. 몰래 들어가거나 조용히 잠시 을 찾게 되는데, 이마저도 관리자의 눈에 띄면, 경비인력을 동원해 끌어내기 일쑤고, 잡상인 보다 더한 취급을 한다. 이유는 ‘교육받는 사람들 중에 원장들이 많고, 원장들이 알면 교육장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원과 원장들의 유착관계가 드러난 것을 보면 이 말이 매우 일리있음을 알게 한다.

○ 모든 교육 기회 박탈

- 평일 낮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육교사들은 행복한 것이다. 주말교육, 야간교육, 사이버교육은 교사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같다. 가정을 꾸리고 있는 여성교사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모두 대체교사의 미확보로 인한 결과라는데, 심지어 안전 교육장, 노동법 교육장에는 참가자의 90%가 원장인 곳도 있다. 교사가 응급처치를 제대로 못했다고, 교사가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다고 과연 교사만 탓할 수 있는 환경인지 정확하게 따져보고 싶다. 이런 현실을 모두 알고도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는 진짜 책임자, 진짜 사용자는 바로 지자체와 정부임을 똑똑히 해야 할 때이다.

□ 보육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이 보육의 질 향상 시킬 것

○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보호신청 접수

- 참여연대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위에서 언급된 블랙리스트제보자와 원내 비리고발자에 대한 보호신청을 6월 24일에 국민권익위에 접수함.
-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발표 및 보육 공공성강화와 보육노동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에 대해 제언 함.

○ 보육노동자의 공적인 고용관계 확보가 필요

- 고용불안으로부터 야기되는 부당행위에 대한 침묵은 보육현장을 붕괴하게 할 것임. 고용안정은 보육행위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더욱 요구하게 할 것이며, 이는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할 것임.

○ 노동인권교육과 보육교사지원제도 설명회가 필요

- 인성교육으로 이뤄낼 수 없는 인권보육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알려내야 함. 영유아의 인권과 노동자 개인의 인권을 제대로 알고 보호 하고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함.
- 보육교사들은 자신들의 처우와 관련된 상세정보를 원대표로부터 자세히 전달받지 못하고 있음. 처우개선비뿐 아니라 보육도우미와 비담임 교사, 대체교사 지원제도 등 각 지자체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달할 수 있음.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문 2

어린이집 운영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박 천 영_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어린이집 운영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박 천 영_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규제 강화론적 관점에서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주장보다는, 아동권리 중심적 관점에서 시설운영의 정상화 방안을 주장한다.

□ 어린이집 정상운영을 통한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하여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

지금까지 보육정책의 기조는 보육예산의 절감과 누수방지 및 부모보육료 부담경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육시설 통제강화 및 저가보육료 정책을 유지해 왔던바, 그 정책의 댓가는 민간 자본의 희생과 보육교사의 노동착취 구조의 고착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노력부족, 부실급식 제공사례 발생, 시설환경 개보수 불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아동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로 귀결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1. 어린이집에 대한 과잉규제 및 과잉처벌 규정 완화.
2. 일부 몰지각한 원장들의 비리 및 불법운영 근절.
3. 언론의 과도한 자극적인 비난성 보도태도 개선.
(극소수 어린이집의 비리 및 사고에 대한 일반화 효과, 초래 근본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보도 결여의 문제)
4. 불공정한 언론보도에 영향받은 일부 국회의원의 편협된 시각의 정책질의로 인한 규제강화책 증가문제.
5. 일부연구기관 및 시민단체들의 보육의 공공성 및 회계 투명성 논리 오남용에 의한 규제.단속강화론 지양.
6. 민간어린이집 적자운영을 개선하고, 교사처우 개선, 양질의 급식제공, 우수한 보육환경 자원 마련을 위한 보육료 현실화 실현.
7. 변칙회계처리와 회계비리 방지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용 재무회계규칙의 합리적인 개정.

1. 서론

1) 주제 선정의 편협성이 종합적인 접근을 차단한다.

위의 주장과 같은 관점에서, 발제자의 원고에서 보여준 사례와 규제강화론적 관점은 우리나라 보육법령과 보육정책 및 보육제도의 문제점의 우선순위와 핵심을 벗어난 단편적인 사례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원고에서 사례로 든, 대구시 달서구 리라어린이집 교사의 상습적인 집단 무단결근 및 집단퇴직 사건의 본질은, 취업방해용 블랙리스트 사건과는 별도로, 이미 보육교사의 아동에 대한 보육책무 해태 및 직업윤리의식 결여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으로써,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에 해당될 수 있는 범법행위이다.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어린이집을 비리집단으로 상정하고, 비리 제로를 외치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방안을 찾자는 관점은, 매우 복잡 다양한 보육법령, 보육정책, 보육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찰이 없이,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더욱더 강화하자는 편협된 논리으로써, 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보육발전에 역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2) 규제와 단속 및 처벌강화로는 보육의 질 개선 불가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육 법령과 정책 및 제도 그리고 보육계 내부의 각종 문제점은 보육정책의 비전문가인 공공운수정책 전공자들이 그렇게 쉽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오늘날 보육정책이 잘못 된 큰 원인중에 하나가, 이미 어린이집은 기능면에서 유치원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굳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입각한 복지시설논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유아교육기관이 갖는 자율성과 권위를 철저히 무시하는 관점에서 초법적인 과도한 규제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잉처벌을 능사로 생각하는 규제와 처벌 만능주의 때문이라고 본다.

<과잉처벌 사례1> 형제인 아동2명의 월간보육료 각각2,000원(합계 4,000원)을 학부모가 자진 초과납부해서 원장이 받은 경우: 3천3백만원 기본보육료(어린이집 전체 기본보육료 1년간 지원액) 환수처분

3) 보육기관의 존립목적과 설치목적에 맞는 생산적인 토론을!

① 존립목적

보육기관의 존립 목적은, 영유아의 심신보호 및 건전한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부모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도움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에 있다고 본다. (*영유아보육 법제1조 (목적), 참조)

② 설치목적

보육기관의 설치 목적은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모와 아동이 만족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기관의 투명성 제고라는 감독강화론적인 시류편승의 관점 보다는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등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특성을 같이 지닌 어린이집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당한 정상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문제점 파악 및 해결책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관점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어린이집의 설립목적 및 기대역할은?

구 분	설립 및 운영 목적	기대역할 (기대이익)
국가, 지자체	부모와 아동이 만족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생산 공급기관 확보	① 출산장려 효과 ② 일자리 창출 (보육의 공공성, 보편성 확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	자기자본과 지식과 경험과 운영 능력을 투자한 후 보육(사업)의 가치 향유 및 적정이윤 추구	① 국가 보육정책에 기여 ② 사회적으로 공인받는 사업가 (보육기관 운영자, 사업소득 기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자신의 자격 및 운영능력을 투자하여 보육의 가치향유 및 급여 소득 획득	① 국가 보육정책에 기여 ② 사회적으로 공인받는 직업인 (보육기관 운영자, 근로소득 기대)

<표>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공무원 직장어린이집)의 차이점은?

항 목 구 분	국공립(공무원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초기설치비(토지, 건물, 비품)	국가, 지자체 예산	개인의 사적재산
건물, 비품의 감가상가비	적립불필요- 예산부담	운영수익금으로 적립해서 충당
시설개보수비	국가, 지자체 예산	운영수익금으로 적립해서 조달
대표자 인건비	공무원이 대직- 국가예산	상근대표자 인건비 지출불허
정원미달시 원장소득	변동없이 매월 일정소득보장	운영자 손실감수 (생계비 걱정)
폐원 등 운영리스크	국가, 지자체가 손실 감당	설립운영자가 손실감수(파산 걱정)

4) 아동 중심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합당한 토론 방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집의 존립목적 및 설치목적에 대한 분석과 고찰 없이, 최근의 언론보도의 편파적이고 선정적인 비난성 보도사례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만 3 ~5세아의 누리과정이 도입된 지금부터, 보육정책의 핵심은 아동이 중심되는 보육과 유아교육이 최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보육/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보육정책의 핵심이 보육예산 누수방지, 부모의 보육료 부담경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가보육료 정책기조였으며, 그 결과 원장이 투자한 자본의 희생과 보육교사의 노동의 착취구조를 고착화 시키게 되었다.

그러므로 보육정책에 대한 토론회는 아동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양질의 보육/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보육/교육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대로 된 우수 보육기관의 육성, 우수 보육교사의 현장근무 촉진을 위한 처우개선 대책, 보편적 무상보육과 과잉보육정책에 기인한 부모의 양육책임 회피 문제점 개선 등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제반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강화만으로는 염려가 되는 핵심문제점 간과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어린이집 설립 운영목적이 달성 될 수 있는 실질적이며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2. 대구 보육교사 집단 무단결근 및 집단 퇴직사건의 본질은?

1) 평가인증의 과중한 업무 회피를 위한 저항적 집단행동.

1일 10시간이상 영유아 보육이후 저녁 야근을 통해서 수개월 동안 평가인증 준비를 위해 무보수 추가노동을 해야만 하는 제도적인 문제에서 파

생된 교사들의 저항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평가인증 테스트 개시 1개월 전에 퇴사한 것임)

2) 불량교사의 상습적인 업무방해 행위.

2012년 4월26일 오전 4명의 교사를 인솔하여 조조할인 영화를 단체 관람하며, 무단결근을 주도한 A교사는 직전 근무지 어린이집에서도 6개월 만에 평가인증 테스트 개시 1개월 전에 5명의 교사를 데리고 무단으로 집단 퇴직한 전력이 있는 상습적인 문제교사로서 의도적인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3) 학기중에 아동을 방치하고 퇴직한 교사는 가장 나쁜 교사다. (도덕적으로는 아동학대중 방임에 해당된다)

어린이집은 학교와 같이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교사는 근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학기는 마치고 후임교사가 확보된 후에 퇴직하는 것이 업계의 불문율이다. 그런데 학기중에 그것도 무단결근과 함께 교사전체가 단체로 평가인증을 1개월 앞두고 집단 결근날 단체 영화보면서 아동을 팽개치는 사례는, 상상이 안 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무책임한 교사의 행동이다.

4) 중대비리의 내부고발과는 전혀 관계없는 악의적인 행동.

발제자 원고는 대구교사 집단퇴직사건에 대하여 여러부분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술하면서, 마치 A교사가 공익을 위하여 원장의 중대비리를 고발하면서 퇴직시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정의로운 내부고발자 인양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금번에도 시청과 구청직원 4~5명의 공무원이 7일간 집중적인 표적감사를 했는데도 중대비리는 한건도 없었다.

5) 교사 집단퇴직 사건에 관한 기술 중 허위 및 착오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책임한 발제자의 주장은 보육현장을 왜곡하고 보육정상화와 보육정책의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잘못된 시작이다.

<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발제자 원고 내용

발제자 원고 내용	(허위 및 착오 부분의) 사실관계
고유업무가 아닌 간식 만들기	간식준비 교사가 할 수도 있음
수당도 없이 간식 만들기(마치 불법적인 수당 미지급인 것처럼)	교사의 차량탑승 및 간식준비는 별도 수당 없음
55명의 간식 만들기	16명의 간식 챙겨주기
두달 여간 야근이 지속	3일간 야근 했음
공사중 매우위험한 보육환경 지속	시설 공사중 아동위험상황 없었음
원의 문제점 건의시 폭언으로 묵살	교사의 건의시 폭언묵살 없었음
조리사를 통해 냉장고에 넣어둔 김밥재료를	A교사가 원장에게서 양호한 상태로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 두었던 김밥재료
김밥재료가 쓰레기 봉투속에 뒤엉켜 보관되어 있었다.	아침에 사기접시에 담아 위생팩으로 포장하여 미사용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A교사에게 주었었다.
A교사는 원을 퇴사했고	21일간 집단 무단결근을 주도하면서 집단퇴사했고
3명 교사의 퇴직사실을 검찰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4명 교사의 무단결근과 무단퇴직을 A교사가 주도하였다.(4월26일 A교사의 카드로 극장티켓 5매구입, 5월16일 5통의 사직서가 동일우체국에 서발송(일련번호 연결)

6) 보육현장에서 최소한의 양심적인 교사에 대한 취업제한용 블랙리스트는 없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대구의 집단무단결근과 집단퇴직 사건은 보육교사 이전에 직장인으로서 최소한의 소양과 직업윤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사건이라고 본다. 보육계 내부에서는 보육교사로서 최소한의 소양과 직업윤리를 가진 교사에 대한 취업제한용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교사 채용시 원장들끼리 전근무지에서 근무태도와 인성에 대한 평판조회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모든 업종, 모든 고용주가 통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 당연하다고 본다.

이번 대구 사건 역시, 사건의 내면과 전체에 대한 정확한 취재와 보도없이 부분이 전체를 왜곡하는 언론의 선정적인 비난성 보도에서 그 파장이 커진 측면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별첨자료> 리라어린이집원장의 사건개요 설명서(임면보고서 2부첨부)

남윤인순 의원 주최, 보육정책토론회 발제자 원고에 대한 반론서

대구 리라어린이집 원장

1. 5일된 썩은 김밥재료의 진실은 2012년 4월25일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이 소풍을 가는데 전날인 2012년 4월 24일 저녁 9시32분에 에이스마트에서 김밥 재료를 구입하고 마트에서 시장 본 재료들을 4월25일 아침8시에 소풍가는 딸 김밥을 싸 주고 남은 김밥재료를 흰색과 남색이 섞인 사기접시에 담아 위생팩에 포장하여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어린이집으로 가지고 가서 현관에 도착하여 A교사에게 전달하면서 “오늘 우리 딸이 소풍을 갔는데 아침에 바빠서 김밥을 못 싸고 조리한 재료를 가지고 왔으니 나중에 같이 싸 먹자” 고 A교사에게 넘겨 준 뒤 바로 볼 일을 보고 들어와서 오후 3시쯤에 B교사와 평가인증 지침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교사들에게 간식 잘 챙겨먹어라 하고 교육 갔다가 올 테니 어린이집을 잘 보고 있어 달라고 A교사에게 부탁 한 뒤 교육 갔다가 저녁 8시 정도에 도착해서 퇴근(9시경) 준비를 하고 내일 보자하고 인사를 나눈 뒤 다음날 아침에 와 보니 선생님들 한 분도 출근을 하지 않아서 수차례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넣어 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아 57명의 만 1세에서 만5세의 아이들이 무방비로 방치한 사건입니다.

당일날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신도 하나도 없었고 도대체가 왜 선생님들이 오지 않았는지 알 수도 없었고 평상시 단 한마디의 불만도 들어 본 적이 없던 터라 더 당황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4월24일 9시32분에 장을 보고 25일 7시쯤에 조리해서 8시에 딸아이 소풍을 보냈는데 못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도

있듯이 우리 딸이 5일 전에 소풍을 갔다는 억측에서 나 온 말이며 조리사 선생님도 5일전 원장 딸 소풍가고 남은 음식이라고 **A교사**에게 들었다고 얘기 했으며, 분명 25일 소풍갔다고 모든 설명을 다 했습니다.

절대 못 먹을 음식을 단 한 번도 제공 해 본 적도 없으며 조리사 선생님이 적어주신 확인서를 꼭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사 선생님이 말씀 하시기를,

[김밥 재료를 원장님이 가져 온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 냉장고에 교사들이 저녁에 먹으려고 보관 하는 것만 확인했다. 봉투에 담겨진 재료들이 상하거나 못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다. 본인들도 저녁에 먹으려고 냉장고에 보관해 둔다고 얘기를 했다. 이상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교사들도 저녁에 사용하려 했고 나도 그렇게 알고 퇴근을 했다. 못 먹을 정도의 상태였으면 당연히 쓰레기통에 버렸을 것인데 상한 냄새나 모양이 이상하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위 내용을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조리사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간식을 4시에 아이들 간식 먹을 때 교사들도 같이 먹었으며 조리사 선생님이 5시30분에 퇴근 한 후 오전에 가지고 온 김밥재료가 냄새나고 썩었다고 주장하며 사진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휘저어서 사진을(사진속 비닐팩을 주목해주세요) 찍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돌아 다니면서 허위 사실과 유언비어들을 퍼뜨리고 다녀서 5월에 고소를 하고 사진을 경찰조사에서 처음 접한 뒤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어찌 이런 음식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조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 했습니다.

오전에 종량제 봉투에 음식을 받았다면, 종량제 봉투에 김밥재료를 받은 **A교사**은 왜 그것을 받고 가만히 있다가 저녁에 그 행동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4월26일은 평가 재인증 자체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입니다. 원장과 **A**

교사가 힘을 합쳐 보고서를 올려야 하는데 주임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평가인증 자체보고서 작성 하는날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정말 몰랐다면 직면유기입니다.

평가인증을 하기 싫은 **A교사**의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A교사** 5월 12일 재혼을 해서 영천으로 떠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4월26일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교사들이 출근 할까 싶어 서로가 못 미더워 **A교사가** 예약하고 **A교사** 카드로 결제하고 다같이 조조로 “간기남”이라는 영화를 보고 저녁9시까지 함께 모여 있으면서 원장이 거는 전화는 서로 안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일체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A교사(2012년 9월1일~2013년 4월25일까지 근무)가 김밥재료를 받아서 2층 부엌에 있는 냉 장고에 **A교사**가 넣어놓고 조리사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A교사가** 사진을 찍어 각 교사에게 톡으로 보낸 사진입니다.

조리사는 **A교사**가 들고 부엌으로 왔다고 얘기하는데 **A교사**는 제가 조리사에게 직접 줬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조리사선생님은 만약에 사진같이 주었다면 버리거나 저에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함

처음에는 상했다 썩었다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다 전날인 4월24일 9시 32분에 구입한 영수증을 보고 이상하다는 말은 빼고 쓰레기봉투 얘기만 주장하고 있음

다음날(4월26일) **A교사**가 조리사에게 전화해 증거자료로 쓸 것이니 냉동실에 보관해 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교사들 전체가 김밥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으나 뒤에 들은바 **C교사**가 **A교사**가 사진을 찍어 톡으로 사진을 전송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2. **A교사**는 평가인증이 끝나는 7월에 마치고 그만 두고 재혼을 한다고 하였고 결혼 때문에 처음에 잡아놓은 휴가를 보내 달라고 하여 4월 9 일~

13일까지 휴가를 다녀오고 16일 출근해서 26일 무단퇴사 했습니다. 그 뒤 5월12일 재혼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휴가 다녀온 뒤 제가 볼일을 보고 들어오는데 특별활동시간에 자기반을 지키지 않고 3세반 교실에 가서 정중앙에 대자로 누워 자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시로 아이들만 교실에 놔두고 교무실에 와서 동료교사 사생활 얘기를 하고 개인전화를 하는 등 독특한 행동을 하여 아이들만 교실에 놔 두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3. **A교사**가 먼저 그만두고 다른 교사가 그만두었고 담합하지 않았으며 경찰조사에서 다같이 그만 둔 사실을 알았다는 소설 같은 얘기는 어처구니 없는 거짓입니다.

진실은 4월26일 다 같이 무단결근한 날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않고 조조로 영화 간기남을 **A교사**가 예약하고 **A교사** 카드로 결제 해서 5명 전원이 봤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으며 5월16일 단체로 5통의 사직서를 한곳의 우체국에서 (일련번호 일치)우편으로 받았습니다

4. 조리사선생님은 점심(12시) 챙겨주고 나면 오후 4시에 간식을 먹는데 3시에 퇴근하면서 준비해 놓고 퇴근하심.

A교사는 교사담당인 차량운행을 하기 싫다고 하여 간식담당을 본인이 하겠다고 해 그릇 세팅하거나 챙겨 나누어 주었으며 간혹 즉석에서 해서 먹는 음식은 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57명이 정원인데 55명의 간식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오후4시에 먹는 간식은 늦게 귀가하는 아이들 16명의 간식이고 선생님들 본인이 먹을 간식을 **A교사**가 준비하면서 본인은 차량을 타기 싫다고 간식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리사는 5시30분에 퇴근하시는데 2012년 1월3일 출근했고 **A교사**는 2011년9월1일 출근했는데 오자마자 바로 간식 담당도 아니었고 2012년 주임이 챙겨주고 있었는데 무슨 5개월이니 6개월이 말도 안됩니다.

5. 당시 **A교사**월급 140만원(4대보험 8만원가량원장부담)누리과정비 20만원포함 총168만원을 주었으며 실지금액 148만원 이었습니다.(만4.5세 정원이23명인데 10명 돌봤음)

6. 부모님들의 불만전화를 수차례 받은 터에 찻솔을 안했다. 신발, 가방이 자꾸 바뀌어 온다. 머리를 감았더니 머리에서 하얀 것이 흘러 내려 보니 머리에 치약이 묻어있었다. 어린이집 입구에는 20개월 갓 지난 3세 아이들의 신발들이 흩어져 있어 몇 번이나 어린이집 들어올 때 제자리에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에 갈 때 아이들이 모르니 잘 챙겨 놓아야한다고 얘기하니 교사들이 하는 말은 아이들의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 그랬단 대답이었습니다.

3월 엄마 품을 떠나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아기들에게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 아이들의 신발을 제자리에 정리 해 두지 않고 바닥에 이리저리 뒹굴게 해 신발을 바꿔 신고가게 했다는 황당한 교사의 대답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교사들이 단체로 그만 두기 전에 세 명의 엄마가 줄줄이 전화가 와서 찻솔질을 안 시켰단 말에 진짜인지 각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찻솔을 만져 보았더니 점심 먹은 후라 당연히 물이 묻어 있어야 하는 찻솔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4개 반의 교사에게 왜 양치질을 안했냐고 물어 보니 바빠서 안했다는 말에 양치질은 꼭 해야 된다고 했다.

이것이 인격모독이라는 등 저에게 인간이하라는 등 모욕감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교사들이 해야 할 업무는 하지 않으면서 원장에 대한 행동들은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고 기본적인 보육일지도 운영일지도 작성하지 않았고 어린이집서류라고는 전혀 안했으며 각반 교실 청소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장이 평가인증 서류를 주지 않아 안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A교사**는 2012년 1월부터 주임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전 주임에게 인수,인계를 다 받았습니다.

7. 꼭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증빙자료/원장님확인서,임면보고서 식)

A교사는 2011년 3월에 드림어린이집에 원감으로 입사하여 평가인증을 9월에 해야 하는데 8월에 동료교사 5명과 함께 그만둔 사실이 있고(증빙자료) 저희 어린이집에 와서 똑같이 5월에 평가인증을 해야 되는데 4월25일 그만 둔 교사이며 이런 일들을 벌이는 상습적인 교사입니다.

저에게도 드림원장님이 정신병약을 먹는다.미쳤다.정신병자다.어린이집에서 잔다, 기분 좋으면 복도에서 춤을 춘다는 등 온갖 허위사실을 얘기합니다.

저도 건물을 사서 교사 지낸 일을 가지고 굿을 했다, 어린이집에 귀신이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동료교사들에게 퍼뜨린 것을 전해 듣고 분노했습니다. 신성한 아이들이 있는 곳을 귀신이 있다는 말로 허위사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2012년 2월에 퇴직한 교사들에게 직장 다 알아봐 주고 나가라고 하고 정작 본인은 저희원에 남게 되었습니다.2012년 근무한 교사들이 그만두면서 “**A교사**랑 일하지 마라. 원장님이 손해 본다 ” 등 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세하게 물어 보지 않은 게 너무 억울합니다.

8. 당시 1층 어린이집만 사용

2층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교실꾸미는 공사와 부엌이전 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2층 공사현장은 한창 공사 중 이어서 들어 갈수도 없고 청소를 할 수도 없으며 공사가 끝나고 저희 남편이 마무리 청소를 해 주었으며 2층 강당이 생겨 자주 사용하지 않으니 아이들 등원전에 교사들이 주 2번 청소 했습니다. 2층은 사용하지 않고 부엌만 사용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가끔씩 사용했고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지도 않는 곳을 굳이 수업시간에 청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당이 생겨 청소부분에 미안한 마음에 청소 도와줄 도우미를 한명 구

해 주겠다고 **A교사**에게 상의하고 면접을 두 명 정도 보았으나 우리와 맞지 않아 못 구하겠다고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자꾸 이용해 청소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9. 교사들이 퇴사하고 난 뒤에도 저에 대해 유언비어들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억울해서 고소를 하게 되었고 검사가 처음에 기각시켜서 미안하다 교사들 별 주겠다고 했을 당시 마음이 편하지 않아 회장님에게 전화해서 화해하고 싶다. 나의 전화는 받지않으니 회장님이 전화 해 달라고 해서 전화를 하였고 57명의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퇴사한 교사가 적어도 아이들에게조차도 미안한 마음이 없는 교사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중 또 한 교사는 다른 원에서 하루 일하고 잠적하고 우리 원에 왔으며 다른 원에 출근하고 그만두고 이리 저리 원을 옮겨 다니며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저에게 전화가 자꾸 와 서 물어보니 원장님들에게 고소사건이니 알려는 쥐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 했으며 회장님께서 이름 다 거론하지 말고 자막처리해서 올리겠다고 하여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고소사건을 알려 준겁니다.

10. “교사 채용시 주의해 주세요!”라는 문건은 저도 처음 보는 문건이며 내용을 주지 않았으며 연합회총무가 전해들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작성한 것입니다.

11. 4월 20일(금) 늦게 가서 저녁으로 짬닭을 시켜줬으며

4월 23일(월) 간식(짬닭3시40분)과 저녁(돈가스 등 8시30분) 시켜주고

4월 24일(화) 일찍 가고

당일(25일)은 평가인증지표교육이라 신입교사와 같이 갔는데 마치고 오면 같이 가려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달을 늦게 퇴근했으면 교사들이 해놓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도 없고 만들다 만 마이크 5개 있었습니 다. 그도 그럴 것이 4월 20일, 23일, 25일 평가인증 준비시작 3일(9시경

퇴근) 일하고 나갔습니다. 4월26일 단체무단결근한 날 각 교실을 둘러보니 이미 교실은 교사들의 물품이나 물건들은 모두 사라진 뒤였고 들은 바로는 3일 전 부터 신랑들이 와서 물건을 다 실어갔다는 타 원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참고로 평가인증을 7월에 하는 것을 제가 5월로 당겼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2008년 평가인증을 하고 2012년 재인증인데 제 마음대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지 교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2012년 3월 ,4월 교사에게 간식,석식 제공한 참고자료(영수증 있는 것만 정리했슴)

3월 3일 비빔명가 - 돌솥비빔밥
3월 5일 참맛찾아 - 코다리찜
3월 7일 슈퍼 - 오징어짬뽕과 과자
3월 19일 장군찜닭 - 찜닭(5시46분)
3월 23일 수가성 - 교사회식
4월 4일 슈퍼 - 왕뚜껍
4월 5일 슈퍼 - 라면
4월 10일 장군찜닭 - 찜닭
4월 12일 장군찜닭 - 찜닭(3시28분)
4월 14일 제과점 - 빵
4월 20일 장군찜닭 - 찜닭(8시54분)금요일
4월 23일 장군찜닭 - 찜닭 (3시40분)월요일
4월 23일 비빔명가- 돈가스,돌솥비빔밥,김치,순두부찌게(8시30분)

제가 교사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먹거리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 했습니다. 수시로 교사간식을 챙겨 주었고 아이들 오후

간식 먹을 때도 조리사에게 교사들 간식도 잘 챙겨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A교사는 딸과 둘이 살아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가불도 해주고 월급도 늘 일찍 주고 딸 운동회 용돈도 챙겨주고 딸 시험기간이라고 집에 음식도 배달시켜 주었고 잡곡쌀도 챙겨 주어 늘 A교사는 고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위의 말은 모든 게 사실입니다.

많은 훌륭한 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번 일로 좋은 교사들이 상처 받지 않기를 바라며 외로운 싸움을 1여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반박 기사도 써 보았습니다. 제가 접한 언론은 지켜보자며 뒤로 물러나고 제 얘 기에는 관심도 없이 자극적인 단어들로 나날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원에 다니는 아기들, 부모님, 우리 현 교사진들이 많이 불안해 합니다.

억울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저희 마음을 진심으로 대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림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달서구

☎ 전화 (053)

휴대폰

시설장

담당자

문서번호 2011-02호

시행일 2011.03.03

(경유)

발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참조 주민복지과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	
번호		공람	
처리과	주민복지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목 : 보육시설종사자 임면보고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시장을 아래와 보고 합니다.

2. 인적사항

번호	직종명	성명 (인자)	주민등록 번호	주 소	본 격	종수성명 및 관계	임면 일자	임면 사유	기복자 (인)	비고
1	보육 교사	A				자	11.03.01	임면		
2	보육 교사					자	11.03.01	임면		
3	보육 교사					자	11.03.01	임면		
4	보육 교사					자	11.03.01	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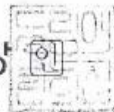
붙임 : 1. 인사기록부 사본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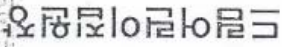
2.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1부.

3. 사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4. 성범죄조회서 1부, 끝.

드림어린이집원장



[illegible]

總局代印 江蘇省銀行發行 地址在 南京 太平門 內 電話 二二二 江蘇省銀行 總局代印

平西局品 1515000015000 : 5000

[illegible]

공공기관 2011-05호

收者
送者
(C90) 按位

三 五 七 九 一

리라어린이집

2012. 2. 29
리정환 교사

우 704-809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277-8번지
 전화 (053) 642-1011 //전송(053) 642-1117 시설장 김 이경 담당자

문서번호 : 리라어린이집 2012-02호

수 신 : 달서구청장

참 조 : 여성가족과장

제 목 : 보육시설종사자 면직사항 보고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면직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 인직사항 등

연번	직종별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주소	등록기준지	임용/면직 일자	별칭 사항	기록자 (날인)	비고
1	보육 교사					2012. 2.29	면직	김이경	
2	보육 교사					2012. 2.29	면직	김이경	
3	보육 교사					2012. 2.29	면직	김이경	
4	보육 교사					2012. 2.29	면직	김이경	
5	보육 교사					2012. 2.29	면직	김이경	

리라어린이집원장(직인)



리라어린이집

우 704-809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40길 77	전화 (053) 642-1011 //전송(053) 642-1117
원 장 김 이 경	휴대폰 010-7278-0059
담당자	

문서번호 2012- 4 호
시행일 2012. 4. 26

(경 유)

수 신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참 조 : 여성가족과장

제목 : 보육시설종사자 임면,면직사항 보고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면직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 면직사항 등

연번	직종별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임용/면직 일자	면직 사항	기록자 (날인)	비고
1	보육 교사	A				2012.4.26	면직	김이경	2012.4.26
2	보육 교사	B				2012.4.26	면직	김이경	"
3	보육 교사	C				2012.4.26	면직	김이경	"
4	보육 교사	D				2012.4.26	면직	김이경	"
5	보육 교사	E				2012.4.26	면직	김이경	"

- 붙임 : 1. 인사기록부 사본 1부
2.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1부
3. 사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4. 성범죄 조회서 1부 끝

리라어린이집원장(인)

3. 아동권리중심의 정상보육을 위해서는 보육법령 및 정책과 제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 1) 과잉규제 완화 및 합리적 규제를 통한 공공성 확보
- 2) 회계투명성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의 합리적인 개정
- 3)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적자구조 탈피
- 4) 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 5) 시설 유형간 부모 부담액 차별 해소
- 6) 시설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부모참여 확대

1) 초법적이고 비현실적인 행정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후, 규제를 강화해도 늦지 않다.

※ 보육비리 및 교사의 열악한 처우 발생의 근본원인 분석표

부정·비리 유형	직접원인	근본원인 및 해결책
허위교사 등록	교사 구인난에 의한 무자격자 채용	교사의 처우개선이 불가능한 낮은 보육료의 현실화 필요.
허위아동 등록	영아반 아동 반당 정원미달에 따른 보육료 수입부족	영아반 기본보육료 대신에 영아반 교사 인건비로 지급으로 제도개선.
부실급식 제공	보육료 수입으로 발생한 적자운영을 보충하기 위함	양질의 급식 제공하도록 보육료의 현실화 필요.
아동학대 사례	수준 낮은 교사의 인성문제, 교사의 분노 조절 실패	수준 높은 우수교사 채용할 수 있는 보육료의 현실화 필요.
특강비 등 지출후 리베이트 수령	①보육료 수입만으로 적자운영, ②정상지출과목으로 인정 안하는 필수지출에 사용 목적(예, 시설개보수비, 감가상각비, 상근대표자인건비, 투자금의 기회비용 등)	①보육료 수입만으로 적자운영 면할 수 있는 보육료의 현실화 필요. ②실제 발생하는 모든 지출내용을 계리 할 수 있는 민간용 재무회계규칙 별도 제정이 필요
교사의 열악한 처우	적은 보육료 수입으로 지불능력 부족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급여 지급이 가능한 보육료의 현실화 필요

※ 유아교육/보육기관의 교육비/보육비 비교표(만 3세이상)

기관구분	월간 총 교육비/보육비	비 고
국공립유치원	63만원 (2011년 충남 평균)	
사립유치원	60만원 (2013년 서울 평균)	추계
정부청사 직장어린이집	55만원 (2013년 정부청사 평균)	과천,중앙,대전청사와 청와대 직장어린이집 의 추계
국공립어린이집	51만원 (2012년 남동.연수구 평균)	(인천광역시), 추계
민간어린이집	37.4만원 (2013년 인천시 평균)	보육료 254,000원 + 기 타 필 요 경 비 120,000원

※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원가에 미달하여 적자운영을 면할 수가 없음. 정부가 4년전에 발표한 표준보육료 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논리의 모순). 정월 미달 시는 적자가 더 커진다.

2) 보육의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 논리가,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과잉규제를 정당화 할 수 없다.

< 민간어린이집 정상운영을 위한 법령과 제도 건의사항>

구분항목	현재의 실정	파생되는 문제점
보육원가에 미달하는 낮은 보육료 문제 ⇒ 표준보육료 수준으로 수납 허용	국 공 립 아 름 이 집 (51 만 원) 의 80%, 정부청사 직장어린이집(55만 원)의 75%, 사립유치원의(60만원) 70% 수준의 저가보육료(40만원)로 적자운 영 상태	1. 열악한 교사 처우 2. 부실불량 급식 3. 시설환경의 불량 및 개보 수 불가 4. 우수 교재교구의 구입불가 5. 운영비 부족분을 특별활동 비 지출차액으로 보전
열악한 교사의 처우문제 ⇒ 8시간 근무제 실시, 급여 인상 재원보전	동업종 중 가장 낮은 보수, 가장 긴 근무시간, 가장 많은 업무량의 중노동	우수교사 근무기피 보육의질 저하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 상존

재무회계규칙의 불합리성의 문제 ⇒ 민간의 재무특성에 맞는 별도의 회계규칙 제정	비영리회계인 국공립시설 재무회계를 적용하므로, 민간의 특성에 따른 필수 지출에 대하여 사실에 부합한 정확한 회계처리가 불가능.	민간자본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 차입금이자, 감가상각비, 시설개보수비, 상근대표자 인건비 지급 등을 사실대로 기장처리가 불가능 하므로 변칙 회계 처리가 불가피함.
영아반 기본보육료 지급방식 개선 ⇒ 영아반 교사 인건비로 지급 (국공립과 불평등 및 차별해소)	민간시설의 영아보육 시 표준보육비와 부모지원보육료와 차액을 시설에 직접지원하면서 잦은 지원중단, 기지원금 환수조치로 안정성 위협, (국공립에는 없는)과잉행정처분의 원인	영아반 보육료 수입의 불안정성 때문에 영아보육이 부실해지고 있음. 영아에 대한 아동 허위등록 사례의 원인이 되고 있음.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영유아보육법령과 제도는?>

- 1)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제한 <표준보육료 수납 불허, 개인자본의 자산가치 및 상근대표자 노동가치에 대한 대가 불인정 회계>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 상 어디에도, 민간어린이집의 적자경영 또는 무수익 경영을 규정한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시행의 공공성확보라는 문구를 확대해석하여,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단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보육료 수납을 강제함으로써 적자운영을 강요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의 자본이 설치비로 투자된 자산가치 및 상근대표자가 제공하는 노동가치를 정상적인 지출항목으로 인정하지 않는 회계규칙은 재무회계의 기본을 벗어난 합리성이 크게 결여된 것으로써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함은 물론, 헌법 제23조에 규정한 재산권

의 과도한 제한으로써 헌법위반에 해당된다고 사료 됨.

2) 평등권의 침해<시설간 보육료 차이, 영아반 교사인건비 차이>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국민은 누구나 똑같이 무상보육의 혜택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공공형,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시설별 보조금 지원의 차이로 인하여) 부모가 납부하는 보육료 부담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은,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써, 헌법위반에 해당된다고 사료 됨.

또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영아반교사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영아반교사의 인건비 지원금의 차이에 따라서, 동일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의 차이에 따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3) 행복추구권 침해 <불합리한 재무회계규칙의 강요, 원가에 미달하는 저가보육료 수납강제>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이 사유재산을 투자하여 (영유아 보육의 보람 향유와 동시에 당당하게 가족생계비를 벌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적법하게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특별활동 관리지침 및 표준보육

단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 보육료(유치원은 원장이 적정보육료 자율결정) 강요 정책으로 인하여, 민간어린이집 운영자 모두가 불합리한 회계규칙에 맞추기 위한 변칙회계처리 및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적자운영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별활동비 수입의 일부를 반환받아서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비정상적인 시설운영을 강요당하면서, 결국에는 부도덕한 횡령범으로 내몰려 사회적 비난과 사법적 처벌까지 당하면서, 당초 어린이집의 설립운영의 목적인 영유아 보육의 보람과 당당한 생활인으로써 가지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은, 명백히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위헌적인 상태라고 사료됨.

3) 민간어린이집 보육의 공공성을 달성하고 있다.

- 1) 보육비용은 비싸도 보육료는 낮은 국공립의 질은?
- 2) 보육원가에 미달하는 저가 보육료에 민간은 적자경영.
- 3) 보육의 공공성을 이유로 적자경영을 강요할 수 있나?

<표>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공무원 직장어린이집)의 차이점은?

항 목 구 분	국공립(공무원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초기설치비(토지,건물,비품)	국가,지자체 예산	개인의 사적재산
건물.비품의 감가상가비	적립불필요- 예산부담	운영수익금으로 적립해서 충당
시설개보수비	국가.지자체 예산	운영수익금으로 적립해서 조달
대표자 인건비	공무원이 대직- 국가 예산	상근대표자 인건비 지출불허
정원미달시 원장소득	변동없이 매월 일정소득보장	운영자 손실감수 (생계비 걱정)
폐원 등 운영리스크	국가,지자체가 손실감당	설립운영자가 손실감수(파산 걱정)

<표> 국공립과 민간의 수익구조의 차이 비교표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수입이 국공립보다 더 적다.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적자운영을 피할 수 없다.

< 정원이 동일한 경우 국공립과 민간의 수익구조 차이 분석표 >

비교 항목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차이분석
정 원		85명	85명	동일 규모
반 편 성		영아반 6반, 유아반 3반	영아반 6반, 유아반 3반	동일한 반 편성
수 입	보육료수입	21,938,000원	23,943,000원	민간이 200만원 많음
	인건비지원	13,417,000원	없 음	국공립이 1,341만원 많음
	기본보육료	없음	5,516,000원	민간이 551만원 많음
	보육료,인건비 총수입/월	35,355,000원	29,459,000원	민간의 총수입액 이 월 589만원 적음
	1인당 평균 보육비용/월	415,941원	346,576원	민간보육료가 매 월 6만9천원 적음
추 가 지 출	초기설치비용	국 가 예 산	민간자본 7~10억	민 간 투 자 자 본 의 기회비용만큼 손 실
	시설개보수비	국 가 예 산	월 100만원 이상 적립필요	민간어린이집의 추가지출요인
	차입금이자	국 가 예 산	월 1.5백만원 이상 소요	민간어린이집의 추가지출요인
	감가상각비	국 가 예 산	월 1.5백만원 이상 소요	민간어린이집의 추가지출요인
	상근대표자	별도 필요없음 (관리공무원 대직)	상근대표자의 인건비 지출을 불허하므로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음	민간어린이집의 추가지출요인
특 이 사 항			민간시설이 더 지출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적기 때문에,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적자운영을 피할 수 없어서, 변칙적인 회계처리가 불가피 함	

<표3-1>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의 수익구조 차이 분석표 (서울)

85명 시설의 반 편성 예, (영아반 6반, 유아반 3반)				
0세	2반 × 3명 = 6	3세	1반 × 15명 = 15명	
1세	2반 × 5명 = 10명	4세	1반 × 20명 = 20명	
2세	2반 × 7명 = 14명	5세	1반 × 20명 = 20명	
구 분		국공립		민간
보육료 수입	0세	394,000 × 6명 = 2,364,000		394,000 × 6명 = 2,394,000
	1세	347,000 × 10명 = 3,470,000		347,000 × 10명 = 3,470,000
	2세	286,000 × 14명 = 4,004,000		286,000 × 14명 = 4,004,000
	3세	220,000 × 15명 = 3,300,000		263,000 × 15명 = 3,945,000
	4세	220,000 × 20명 = 4,400,000		254,000 × 20명 = 5,080,000
	5세	220,000 × 20명 = 4,400,000		254,000 × 20명 = 5,080,000
		(85명, 9반) 합계 = 21,938,000		(85명, 9반) 합계 = 23,943,000
인건비 지원	원장(80%)	1인 × 2,000,000 = 2,000,000		영아반교사 인건비지원 못받는 대신에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음
	취사부(100%)	1인 × 1,250,000 = 1,250,000		
	영아교사(80%)	6인 × 1,427,000 = 8,562,000		
	유아교사(30%)	3인 × 535,000 = 1,605,000		
		합 계 = 13,417,000		
기본보육 료	0세	영아반교사 인건비 지원받기		0세 6명x 361,000 = 2,166,000
	1세	때문에 기본보육료는 미지원		1세 10명x 174,000 = 1,740,000
	2세			2세 14명x 115,000 = 1,610,000
				합 계 = 5,516,000
보육료와 인건비 등 총수입		합계 = 35,355,000		합 계 = 29,459,000 (수입차액: - 5,896,000)
1인당평균보육비용		415,941원		346,576원 (차액: -69,365원)
회계구조의 차이점 (민간어린이집의 추가적 지출 항목)		초기시설투자금 : 국가지 자체 부담 시설개보수비적립 : 필요 없음 차입금이자 납부 : 필요없 음		초기시설투자금: 약 7 ~10억원 시설개보수비적립: 월 1백만원 차입금이자 지급: 월 1.5백만원 감가상각비적립: 월 1.5백만원 대표자인건비: 무보수? (추가지출 필요금액: 월400만원)

- ▶ 동일 인원 규모의 국공립에 비하여, 민간어린이집이 매월 590만원의 수입이 적으며, 더구나 시설 개보수비, 차입금이자, 감가상각비 및 대표자 인건비로 월 400만원 정도의 추가지출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운영난이 매우 심각하다.
- ※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아반 교사인건비는 반당 영아의 정수에서 1~2명이 부족해도, 매월 동일한 금액의 인건비 보조금이 지원되어 수입의 안정성이 유지되지만,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매월 출석하는 영아의 숫자에 따라 기본보육료가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정원미달 또는 결석일수가 많은 경우에는 수입이 더욱 감소하여 운영의 안정성이 더 크게 위협 받는다.

<표3-2> 국공립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수익구조 차이 분석표(서울)

40인 시설의 반편성 예 (0세아 4반, 1세아 3반, 2세아반 2반)				
0세	4반 x 3명 = 11명	3세	유아반 없음	
1세	3반 x 5명 = 15명	4세	유아반 없음	
2세	2반 x 7명 = 14명	5세	유아반 없음	
구 분		국공립		민간
보육료 수입	0세	394,000 x 11명 = 4,334,000		394,000 x 11명 = 4,334,000
	1세	347,000 x 15명 = 5,205,000		347,000 x 15명 = 5,205,000
	2세	286,000 x 14명 = 4,004,000		286,000 x 14명 = 4,004,000
	3세	220,000 x 0명 = 0		263,000 x 0명 = 0
	4세	220,000 x 0명 = 0		254,000 x 0명 = 0
	5세	220,000 x 0명 = 0		254,000 x 0명 = 0
		(40명, 9반) 합계 = 13,543,000		(40명 9반) 합계 = 13,543,000
인건비 지원	원장(80%)	1인 x 2,000,000 = 2,000,000		영아반교사 인건비지원 못받는 대신에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음
	취사부(100%)	1인 x 1,250,000 = 1,250,000		
	영아반(80%)	9인 x 1,427,000 = 12,843,000		
	유아반(30%)	0명 x 535,000 = 0		
		합 계 = 16,093,000		

기본보육료	0세 1세 2세	영아반교사 인건비 지원 받기 때문에 기본보육료는 미지원	0세 11명 x 361,000 = 3,971,000 1세 15명 x 174,000 = 2,610,000 2세 14명 x 115,000 = 1,610,000
			합 계 = 8,191,000
보육료와 인건비 등 총수입		합 계 = 29,636,000	합 계 = 21,734,000 (수입차액: - 7,902,000)
1인당 평균보육비용		740,900원	543,350원 (차액: -197,550원)
회계구조의 차이점 (민간어린이집의 추가적 지출 항목)		초기시설투자금 : 국가지체부담 시설개보수비적립 : 필요 없음 차입금이자 납부 : 필요 없음	초기시설투자금: 약 3.5억~5억원 시설개보수비적립: 월 0.7백만원 차입금이자 지급: 월 1.1백만원 감가상각비적립: 월 1.0백만원 대표자인건비: 무보수? (추가지출 필요금액: 월280만원)

- ▶ 동일 인원 규모의 국공립과 비교하여, 민간어린이집이 매월 790만원의 수입이 적으며, 시설 개보수비, 차입금이자, 감가상각비 등으로 월 280만원 정도의 추가지출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운영난이 매우 심각하다.
- ※ 지원시설의 영아반 교사인건비는 반당 영아의 정수에서 1~2명이 부족해도, 매월 동일한 금액의 인건비 보조금이 지원되어 수입의 안정성이 유지되지만,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매월 출석하는 영아의 숫자에 따라 기본보육료가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정원미달 또는 결석일수가 많은 경우에는 수입이 더욱 감소하여 운영의 안정성이 더 크게 위협 받는다.

4. 보육료 현실화 없이는 민간보육 비리척결 불가능하다

- 1) 보육료 현실화 외면하는 정부의 직무유기는?
- 2) 적자구조인데 교사급여인상, 양질의 급간식 가능할까?
- 3) 시설환경개보수는 무슨 돈으로 하나요?
- 4) 표준보육료 재산정은 원가회계 전문가에게 맡겨야!

5. 회계투명성은 재무회계규칙의 합리적 개정으로 가능하다.

- 1) 리베이트 조장하는 잘못된 회계규칙을 개정해야!
- 2) 재무회계규칙은 영리사업용 복식부기가 맞다.
- 3) 회계의 투명성은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으로 가능.

<사례분석> 현원 136명 민간어린이집의 월수입.지출 결산서 내역

1 시설현황 및 운영상황

1) 아동 현황

정원	현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시간연장	비고
139	136	5	11	42	44	24	10	10	시간연장아동 1일평균 3명

2) 교직원 현황

계	원장	담임교사	누리비담임	시간연장	영양사	조리사	간호조무사	운전기사
24명	1	15	2	1	1	2	원장겸직	2

3) 통학차량 현황

총대수	12인승	19인승	19인승은 중고차 구입함, 2,700만원중 적립금 4백만원 은행융자2,300만원 36개월 할부 (월 할부금 1,000,000원) 2대 모두 어린이보호 차량 신고필
2대	1대	1대	

4) 시설자산 현황 (2010년 하반기 개원)

: 총자산 13억원 (대지110평 5억원, 건물 180평 7억원, 집기비품구입 1억원) 자기자본 7억원,

타인자본 6억원 (은행차임금 6억원, 이자율 5.65%, 월이자

2,825,000원)

5) 감각상각비 : 2,639,000원

건물 (700,000,000-35,000,000) / 360개월 = 1,847,000원

비품 (100,000,000-5,000,000) / 120개월 = 792,000원

2. 월별 결산 현황

1) 매월 6,517,000원 적자 발생 (지출총액 58,548,000원 - 수입총액 52,031,000)

<붙임>월간 수입지출 계산서

수 입	지 출
1)보육료: 37,063,000원 0세 5명 X 394,000원 = 1,970,000원 1세 11명 X 347,000원 = 3,817,000원 2세 42명 X 286,000원 = 12,012,000원 3세 44명 X 254,000원 = 11,176,000원 4세 24명X237,000원= 5,688,000원 5세 10명 X 240,000원 = 2,400,000원 2)기본보육료 ; 8,229,000원 0세 5명 X 361,000원 = 1,805,000원 1세 10명 X 172,000원 = 1,720,000원 2세 42명 X 112,000원 = 4,704,000원	1) 인건비 합계 : 24,470,000원 (원에서 지급금액만) 원장 18호봉 2,820,000원 x 1명 = 2,820,000원 교사 1호봉 1,170,000원 X 5명 =5,850,000원 교사 2호봉 1,220,000원 X 4명 =4,880,000원 교사 3호봉 1,260,000원 X 3명 =3,780,000원 교사 4호봉 1,280,000원 x 1명 =1,280,000원 교사 4호봉 1,380,000원 X 1명 =1,380,000원 교사 4호봉 1,580,000원 X 1명 =1,580,000원 시간연장교사 1,100,000원 X 1명 =1,100,000원 누리과정정보조 1,100,000원 x 1명 =1,100,000원 누리과정정보조 700,000원 x 1명 =700,000원 2) 제 수당 : 처우개선비 (시비) 합계 880,000원 3) 환경개선비 및 누리과정 수당 교사직접 수령 제외 4) 일용잡금 : 합계 4,970,000원 조리사 1 월 1,050,000원 x 1명 = 1,050,000원 조리사 1 월 1,020,000원 x 1명 = 1,020,000원 영양사 1 월 300,000원 x 1/5명 = 300,000원 운전기사 월 1,500,000원 x 1명 = 1,500,000원 월 1,100,000원 x 1명 = 1,100,000원 간호조무사 : 원장 겸직 5) 퇴직적립금: 월 2,100,000원

3)기타지원금 : 4,562,000원 간식비지원 2,000원 X 136명= 272,000원 누리과정비용 55,000원X 78=4,290,000원 4)인건비보조 : 2,080,000원 시간연장지정교사 1,200,000원 처우개선비(시비) 80,000X11명=880,000원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임용후 3개월부터 지원) 5) 시간연장 보육료 : 97,000원 (1시간당 2,700원, 1일평균 1. 5시간) 2,700원 x 1.5시간 x 3명 x 24일 =	6) 사회보험 : 월 2,995,620원 7) 기타후생경비 : 497,500원 (교사교육, 교사회식비 등) 8) 기관운영비 : 월 200,000원 9) 직책급: 월 1,000,000원 (간호조무사 겸직 수당 포함) 10) 회의비 : 200,000원 (교사회의 월 2회) 11) 여비 : 100,000원 12) 수용비 및 공공요금: 월 3,500,000원 13) 차량비: 1,167,000원 (차량 2대 유류대및 수리비) 14) 연료비 : 월 120,000원 (조리실 취사용) 15)기타운영비:6,464,000원 (이자,차량할부금,감가상각비) 16) 급간식비: 5,973,000원 (1,830원 X 136명 X 24일) 17) 교재교구비 2,200,000원 (누리과정교재 포함) 18) 행사비 : 711,000원 (어린이날,어버이날) 19) 시설비 : 0원 (지금은 신축 건물 3년됨) 20) 자산취득비 857,000원 (책상,의자,선풍기등 비품) 21)시설장비유지비:143,000원 (에스원월비용:cctv)
합 계 : 52,031,000원/월	합 계 : 58,548,000원/월
순손실 : 6,517,000원/월	

<주>① 특별활동비는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기 때문에 계산에서 제외 함.

② 수입은 전액 계상되었으나. 지출은 실제지급 할 현금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적게 계상되었음.

6.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비례한다.

- 1) 원장과 교사는 동반자요, 동역자다.
- 2) 교사1일 8시간근무제 적극 찬성한다.
- 3) 교사 2교대 보다는 부모들의 양육책임 분담이 현실적.

7. 원장에겐 자긍심을, 교사에게겐 사기진작을!

- 1) 어린이집 원장은 슈퍼우먼? 암 발생율 매우 높다.
- 2) 원장과 교사, 유아교육 전문가로 예우하자.
- 3) 보육교사의 처우를 병설 유치원 수준으로 개선해야!

8.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같은 유아교육기관이다.

- 1) 유치원 관리감독자에도 사법경찰권이 필요한가?
- 2) 파파라치제도 보다는 원장.교사의 수준 향상 대책을!
- 3) 유치원과 같은 운영자율권을 최소한이라도 부여해야!

<표3>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과의 차이점 비교

항 목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비 고
교육비/보육비 (결정 방법)	30만원 ~ 45만 원/월 (원장 자율결정)	22만원 ~ 27만원/월 (시.도지사 결정고시)	실제는 복지부 가 통제하고 있 음
기타 필요경비 (결정 방법)	항목 및 금액을 원장이 자율결정 (15만원 ~25만원/월)	항목 및 금액, 시.도지사 결정고시 (5만원 ~15만원/월)	지역 및 시설여 건에 맞는 자율 권 보장 필요함
교육비/보육료 초과 수납시 처벌조항	일체의 처벌 규정 없음	① 초과수납분 반환 ② 시설전체가 받은 영아반 기본보육료 보조금 반환 ③ 3월내 시설운영정지 ④ 3월내 원장 자격정지 ⑤ 형사처벌(1년, 500만원)	현재의 보육료 수준으로는 모 두가 준범죄자 상태임 ⇒ 원장의 자금 심 훼손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
교사 수당 보조금	35만원 ~ 45만원	17만원 ~ 35만원 (농어촌: 28만원 ~ 41만 원)	팔호안은 농어 촌교사수당 포 함금액임
교육/보육시간	4~6시간	8~12시간	근로기준법 위 반
교사 급여수준	월 200만원~220 만원	월 160만원 ~180만원	보육교사의 낮 은임금
교사 구인난	교사 구인난 없 음	교사 구인난 매우 심각 함	근무기피 심각 함
종일보육비 지원	1일 8시간 이상 교육시 7만원 지 원	1일 12시간 보육시에도 일체의 지원 없음	종일제 보육시 간을 8시간제로 개정 필요
교재교구비/환 경 개선비 등 지원	년간 800만 원~1,200만원 지 원	년간 50만원~120만원지원	교구자재, 시설환경 매우 열악함

*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유치원과 똑같은 유아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하
는 민간어린이집에도, 사립유치원과 비슷한 정도의 규제완화와 운영자율권
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헌법상 평등권 보장)

4. 결론

그동안 부모의 이익과 정부나 시민단체의 입장을 우선시하고 시설 운영자의 입장에 대한 배려는 전무했던, 규제와 단속과 처벌위주의 보육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정부와 시민단체는 아동중심의 보육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시설운영자에게 최소한의 운영 자율권과 적자구조를 탈피하도록 정상적인 운영여건을 조성해 주면서, 보육서비스 수준과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 없는 단속과 처벌강화 대책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급히 제도개선을 위해 합심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 1)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이면서도 특별한 유아교육기관으로 인식
- 2) 규제와 처벌보다는 자율정화와 선의의 질적 경쟁을 유도
- 3) 원장과 교사를 유아교육의 전문가로서 예우하고 상응한 처우개선 시급
- 4) 표준보육료 이상의 보육료 현실화로운영의 안정성 보장
- 5) 재무회계규칙의 합리적 개정으로 회계투명성 여건조성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문 3

‘위기의 보육’을
‘희망보육’으로

장 미 순_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위기의 보육’ 을 ‘희망보육’ 으로

▶ 장 미 순_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

연일 터지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는 학대, 비리, 공무원과 유착 등 보육정책의 총체적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공공의 영역인 보육을 민간시장에 의존한 결과 어린이집이 사업장이 되어 영리가 우선시 되고, 투자자인 원장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인의 재산을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투자금 회수는 당연한 것이며, 투자금 회수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이를 감추려다 보니 보육교사를 비민주적으로 관리하고, 폐쇄적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구조적 문제가 비리를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한 피해는 아동과 부모,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보육교사들의 ‘블랙리스트’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말로만 듣던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내부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이 용기 내어 문제를 제기해도,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문제 제기한 교사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문제는 교사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부모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이가 피해를 당해 어린이집에 문제제기하거나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한 부모들의 명단을 원장들이 공유하면서 입소거부 및 퇴소를 종용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아직 문건으로 발견되지 않았지만 부모들이 실제 경험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후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당하고 다른 어린이집의 입소거부로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고 있는 가정

있고, 아동학대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고소한 것 때문에 ‘블랙컨슈머’로 몰려 주변어린이집에서 입소를 거부하고 어렵게 들어간 어린이집도 각종 이유를 들어 퇴소를 종용당한 가정이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 상당수 부모들은 원장들로부터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나 원장들은 그것을 시정하기보다 사법권 남용으로 부모들을 위협하고 있다. 당연히 문제 있는 어린이집을 부모들이 공유하고 알 권리가 있으나 비리 어린이집 공개지침이 아직 시행 전이라 원장들은 부모들이 개인적 공간인 SNS와 부모카페에 올린 것을 이유로 고소를 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학대 및 퇴소를 당하고 입소를 못하고 있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면서 심하게는 성장장애까지 겪는 경우도 있다. 이기적인 원장들의 행태가 아이와 부모 해당 가정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또 보육공무원 수가 터무니없이 모자라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각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관련 공무원이 많아야 2~3명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이들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화확인이나 형식적인 행정업무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민원이 제기되면 자신의 관할 업무에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해당 어린이집원장에게 시정 및 타협할 것을 권하면서 유착으로 발전하게 될 확률이 높고 실제 유착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 시내 어린이집 원장 수십 명이 간 소풍에 관할 공무원이 동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공무원이 민원 제보자와 내용을 유출하면서 문제해결이 아닌 사태를 악화시키고 피해를 키우고 있다. 이런 구조가 바뀌려면 관립 업무지침 강화 및 관련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보육에서 원장이 ‘갑’이 되어 횡포를 부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우처 제도를 활용한 보육료 지원방식 때문이다. 부모의 손을 거치지 않고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되는 방식은 보육료 지원이 시혜인양 고맙게 생각한다는 일부 원장들의 편파적 생각을 부추겨서 부모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주체로서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고 감시해야 할 책임감을 감소시키고, 어린이집 서비스 경쟁까지 위축시키고 있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바우처 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고 보육료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린이집 문제가 불어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당장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이어서 부모들에게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그동안 부모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초기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재정의 한계를 들어 국공립보다 민간을 확대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지 않는다면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횡령과, 부정수급 등 각종 편법을 통해 편취해간 금액을 계산한다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길이다. 최근 어린이집 비리로 비난을 받은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육료를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정부의 보육료만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지만 시설투자 비용이 높은 민간어린이집은 현재의 보육료로는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만 이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리어린이집은 국가가 인수해서 국공립화 하는 것도 비리를 근절시킬 방법이다.

관련업체 리베이트 및 부모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면서 특별활동비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특별활동비는 각 지자체 보육위원회가 상한가를 제시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비슷한 교육이지만 사는 동네에 따라 특별활동비가 천차만별이다. 특별활동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중앙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사실 특별활동은 부모의 심리를 이용한 돈벌이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는 누리과정 안에 특별활동에서 하는 교육을 포함시켜 별도의 특별활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어린이집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인증 보완 및 모니터 강화

와 사후처벌 강화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평가인증 준비 때문에 교사들이 보육은 뒷전이고 서류준비로 한 달 이상을 야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평가인증에 대한 필수항목 간소화가 필요하고 모니터나 감시카메라보다 보육교사들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어린이집이 열린 어린이집으로 부모한테 개방해야 한다. 교사가 편안하게 보육할 환경이 되고 어린이집 운영에서 감출 것이 없다면 부모들에게 개방하고 참여를 높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 정부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려다 도리어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당선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정부가 보육재정을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또다시 보육대란이 예고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보육은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 보육은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담보로 한 우리의 미래이다. 보육이 제대로 안착되어야 출산율도 올라가고 여성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정부는 ‘위기의 보육’을 ‘희망보육’으로 바꿔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길 바란다.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문 4

‘블랙리스트’와 ‘블랙컨슈머’,
진실은 가려지고 있다.

박 차 옥 경_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블랙리스트’와 ‘블랙컨슈머’, 진실은 가려지고 있다.

▶ 박 차 옥 경_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누가 ‘블랙리스트’와 ‘블랙컨슈머’를 말하는가?

- 어린이집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
- 정부는 10년 전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늘려서 부모들이, 엄마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음. 그동안 세금으로 기본보육료, 보육료, 교재교구비 등 많은 이름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왔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음.
- 현재, 부모는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지만, 여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누구나 보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 몸과 마음을 다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상처를 보며 흘리는 부모의 눈물, 미안함, 자책감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보듬어 줄 수 있을지 고민됨.
- 정부는 소위 ‘무상보육’을 통해 정부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등한시 해 옴. 지난 10년간 재정지원이 보육서비스 질로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역할보다 시장, 민간영역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발제자가 말미에 언급한 ‘민간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도 국공립 확충을 위한 보육재정 조정,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내실화, 지자체와 어린이집 유착 단절,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상시적인 근로감독, 지자체 직접고용은 재고할만한 가치가 있는 대안으로써 논의될 가치가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을 구성해야 함.

□ 원장과 보육교사의 1:1 고용관계 해소를 통해 어린이집 내부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일생활양립을 위해 보육정책은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돌봄의 사회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지난 2012년에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으며, 어린이집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
-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하면서 부모가 보다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 대한 내부모니터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장과 보육교사간 1:1 고용계약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함. 또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배출과정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좋은 보육 내용으로 아이 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만들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는 어린이집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관리 할 수 있어야 함.

□ 가칭) 보육지원센터의 내용

- 부모의 편의성 재고 : 부모가 어린이집 이용을 신청하면, 근거리에서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등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소개하고(시설 정보제공 등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어린이집에 대한 불만과 고충 등을 처리하기도 함.(기초와 광역단위의 역할 분담

속에서 광역단위가 그 역할을 하게 됨)

- 보육교사의 노동조건 변화 : 보육교사의 경력관리와 재교육을 담당하면서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구인할 경우 취업을 희망하는 여러 교사를 소개함. 어린이집 원장은 소개 받은 교사 중 면접 등을 통한 선발하고 평가하며, 해고 등에 관한 임면권을 가짐.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보육교사는 센터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 내부 문제를 공론화 할 수 있음. 보육교사 해고 등에 대해서는 광역단위에 사유를 제출하고 정당성 사정 후 최종 해고 결정을 내림. 기초단위 센터는 이직율이 높은 어린이집이나, 해고가 빈번한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함.
- 어린이집 인증 및 품질 관리 : 어린이집 신청은 지자체에, 인가는 지자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며,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담당하지만, 어린이집 안전, 위생, 회계 등을 감독하는 일상적인 어린이집 모니터링은 기초단위 센터에서 수행함. 평가모니터링 결과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취합하여 평가인증 및 재 인증에 반영함.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종사자의 자격과 근속기간을 품질인증 항목에 포함시켜서 평가인증제가 실질적인 퇴출기제가 되도록 함. .

□ 기타 고민

- 지자체 직접고용이 최선의 방안이지만,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존재하므로 대안을 모색해야 함.
- 지자체(기초, 광역), 보육진흥원, 보육정보센터 등 현재 보육 관련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조정 필요.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문 5

윤 자 영_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문 6

방 석 배_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문 7

박 광 일_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문 8

공익신고자 블랙리스트 작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김 안 태_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장

공익신고자 블랙리스트 작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 김 안 태_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장

□ 공익신고자 블랙리스트 작성은「공익신고자 보호법」위반

어린이집 비리신고자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대외적으로 알려진건 지난 5.9일자 중앙일보 기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권익위는 이에 대해 공익제보자의 신분사항이 조직적으로 외부에 노출된다는 사실에 대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동월11일자로 내부비리를 신고한 보육교사들의 신상정보(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리는 경우「공익신고자 보호법」위반 행위(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피해자 신청도 받아 불이익조치자에 대해 형사고발할 계획 등 내용의 보도자료(연합, 중앙 등)를 배포한 바 있음

당초「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편취 등 부패행위 신고 부분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자 비밀보호 뿐만아니라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불이익을 준 원장 등에 대해서는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만 그 외 아동학대 등 위반행위는「영유아보육법」에 저촉이 되어「공익신고자 보호법」적용을 받음. 현행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월

진 법체계가 강력하고 적용 범위도 넓다고 할 수가 있음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알기가 매우 어렵고 그건 아마 영유아의 인지수준 때문에 그럴수도 있겠지만 통상 어느 집단이고 조직의 비리사실은 내부직원이나 당사자 외에는 은밀화, 구조화되어 알기가 어려움. 그러므로 부패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한 정책적 통제수단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생각하며 내부고발을 유도하여 내부실상을 파악하고 노출시키는 것이 비용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음. 이번의 내부 공익제보자를 피신고자인 원장이 신고자의 신원을 블랙리스트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관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돌려 공익제보 보육교사의 재취업을 막고 있다는 사실은 상황적으로 상당히 충격적이고 심각한 사례이며 이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벌칙조항에서도 신고자에 대해 파면, 해임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2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중하게(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정하고 있을 정도로 중하게 여기고 있음

최근 어린이집 관련 사태가 언론을 통해 불거진 것은 2월 00구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다 퇴출된 보육교사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 비리 등 횡령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00경찰서 등으로 알아봐 신고자의 신고유도를 시도하였으나 명단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신분보호 신청접수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신고자 비밀노출 및 신분보호 등의 보호자 관련 조사는 인지나 직권에 의한 조사가 안되며 신청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물론 신청을 받았어도 신고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이 횡령사건으로 향후 거취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신고자의 복직 등 원상회복 자체가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향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호 업무와 관련해서는 권익위에 직접 인지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 불이익 상황에 대해 근원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한편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권익위에서 나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단「근로기준법」상으로 보면 근로계약 상 ‘갑’인 원장이 ‘을’의 관계에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 재취업 방해목적의 블랙리스트 작성배포는 제 40조에 나온 취업방해의 금지 조항에 위배되고 또한 보육교사가「영유아보육법」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다면「공익신고자 보호법」위반으로 처벌대상임

주목할 점은 근로자(보육교사)가 소수인 어린이집의 특성 상 내부고발을 하면 보육교사의 평소 행동양상 같은 것을 추론하면 신고자가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므로 실제 원장의 위법사실에 대한 신고는 보복 우려로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마 신고상황까지 갔다면 쌍방의 불신적인 관계가 갈 때 까지 가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 신고자인 보육교사는 신고 이후 그 조직에 더 이상 몸담지 않을 각오로 신고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

□ 어린이 집 보육교사 등 공익신고자 재취업 방안 마련 추진 필요

그렇다면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중 하나는 일단 내부의 비리를 노출시키는 방안은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하나이고 그리고 내부고발로 인해 차후 발생하게 되는 보육교사의 실직상태를 제자리로 복원시켜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봄

물론 그 이전에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공익신고자 보호법」규정에 따라 보호절차가 이루어지겠지만, 아직까지 사회분위기가 내부고발자인 사실을 알면서 자기 조직에 받아준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나 이것은 국가 등 책임있는 기관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령 제20조에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을 요청할 수 있다”로 근거 규정이 있어 제도적으로는 길을 열어 놓았음. 제도시행 이후 권익위 사건 중에 그러한 사례는 있었으나 강행규정이 아니다 보니 권위위 독자적으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즉 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그 조직에 계속 몸담을 수가 없어 본인의 의사대로 퇴직금을 받고 자진 퇴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조정역할(화해)을 하였고 다른 지점에 재취업을 위한 기관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이행이 안되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 뿐만 아니라 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 등과 **공익제보자 재취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최근 알아본 바에 따르면 00구 어린이집 사건 이후 내부고발에 가담한 5명의 보육교사 중 2명은 구청에서 취업을 알선하여 재취업에 성공하였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추진중에 있다는 사실은 바람직한 시그널로 보여짐

그리고 어린이집 비리특성상 신고자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보육교사단체, 학부모단체 등 대리인 명의로 신고를 하는 방안도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음

□ 공익제보는 권익위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유리

이번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 집의 비리를 세상에 알린 내부고발자를 우리 사회가 보호해 주는 것이며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암암리에 공개하거나 내부고발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사후에라도 경종의 의미에서도 고발 조치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권익위에서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 몇몇 어린이집 관련 신고 또는 보호조치신청이 들어오고 있음. 앞으로 가능하면 권익위로 직접 신고를 하시는게 사건처리나 비밀보장에도 도움이 되며 또한 신고로 인해 불이익 사례가 있으면 보호조치 신청도 아울러 적극 해주십사 당부드리며 관련 단체도 이런 내용을 적극 알려주시기 바람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illegible]

질문지



